소규모 아동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Ⅱ

아동생활시설 :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영역

온프렌즈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일련번호 자료집 통권 303호 **발행일** 2025년 4월 30일 **발행처**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화 02-732-7979 **Fax** 02-732-7980 **홈페이지** www.kaccc.org **전자우편** kaccc@kaccc.org
주소 (07245)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20길 60, 메가벤처타워 706호, 707호

소규모 아동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Ⅱ

통권 303호

소규모 아동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Ⅱ

아동생활시설 :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영역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온프렌즈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더채움교육복지연구소

소규모 아동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II

- 아동생활시설 : 공동생활가정, 학대아동쉼터 영역 -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온프렌즈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더채움교육복지연구소

본 매뉴얼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의회에서
감수하였습니다.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Korea Council of Group home for Children & Youth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의회
AcSK

[목 차]

Ⅰ. 안전관리 기본개요

1. 안전관리 기초 ····· 1
2. 안전관리 원리와 영역 ····· 1
3. 안전관리 체계 ····· 7
4. 안전관리 관련 법 ····· 10

Ⅱ. 안전관리 활동

1. 전기 안전관리 ····· 14
2. 가스 안전관리 ····· 17
3. 화재 안전관리 ····· 20
4. 위험물 안전관리 ····· 22
5. 승강기 안전관리 ····· 23
6. 교통사고 안전관리 ····· 25

Ⅲ. 재난 및 피난활동

1. 사회재난 ····· 28
2. 자연재난 ····· 41

Ⅳ. 안전관리 계획서 ····· 57

부 록

1. 안전점검표 ····· 93
2. 참고문헌 ····· 99

안내하는 말

우리는 누구나 위험 가능성이 없는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잘 살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자연재난 뿐 아니라 사회재난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재난의 상황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다가올 재난에 대한 인적, 물리적,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를 통해 예방과 재난활동 및 피난을 통한 초기 대응방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재난은 "뜻밖에 일어난 재앙과 고난"이라는 뜻으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재난은 일반적으로 자연재난, 사회재난, 해외재난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정의한다.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재난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을 말한다.

어떤 재난이든 발생하면 피해는 치명적이므로 우선적으로 예방이 중요하며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과 구조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아동은 위기의 재난 상황에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우므로 아동시설의 종사자들은 아동의 특성과 권리를 이해하여 재난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동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안전관리를 능력을 갖추고 종사자 자신과 아동, 모든 이용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 매뉴얼은 공동생활가정이나 학대 피해 아동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공동생활가정이나 쉼터는 일반 가정과 같은 주거공간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생활시설이다. 특히 공동생활가정이나 쉼터와 같은 소규모 생활시설은 점검이나 안전 평가가 수시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전관리나 계획서를 수립하고 대응해 나가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설 내 안전문제가 발생 될 시 아동들이 원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렵고 전원 조치를 해야 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 책은 크게 각 재난 상황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 단계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재난활동, 피난, 복귀 및 사후조치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아동공동생활가정과 쉼터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안전관리를 위한 각 분야의 내용을 숙지하고 각자 자

신의 역할 및 준비해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내용은 이후 아동들에게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건강하게 안전습관과 안전한 태도를 갖출 수 있는 교육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부. 안전관리의 개요에서는 안전관리의 기초와 원리, 안전수칙, 안전체계와 법령 등을 살펴보게 된다. 2부. 안전관리 활동은 주로 사회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3부. 재난활동 및 피난활동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중 자주 접할 수 있고 또 필수적으로 알아 두어야 할 대응방법 및 대처행동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4부 안전관리 계획서는 화재, 피난, 비상시 대처와 응급 매뉴얼 등 네 가지의 주요한 주제가 제시되어 있다. 시설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 계획 내용과 다양한 상황에 대처, 교육할 수 있는 예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시설에서 스스로 위험상황을 체크하고 중요성을 짚어보도록 하기 위해 준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안전점검표를 부록에 추가하였다.

각 영역별 주요 내용과 시설 종사자와 아동들이 지켜나가야 할 임무나 역할,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안전하게 지켜나간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Ⅰ. 안전관리 기본개요

1. 안전관리 기초

1) 안전관리의 중요성

- 안전은 뜻하지 않은 사고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상해의 위험 가능성이 없는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를 뜻한다.
- 안전은 아동 상해의 위험 가능성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
- 안전관리는 사고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관리하고 교육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 포함된다.

2) 안전관리의 필요성

- 아동을 돌보고 있는 시설에서는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막고 대처할 수 있도록 각 영역별로 작성된 계획서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한 예방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설 종사자들은 안전관리를 통해 체계화된 계획을 세우고 혹시라도 발생되는 안전사고의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각 시설에서는 안전계획서에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아동에게 정기적으로 교육, 훈련하고 관리자나 이용아동 모두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대처하여 발생 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안전관리 원리와 영역

1) 안전관리 원리

- 안전관리는 아동시설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재산과 신체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 안전관리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바탕으로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의해 실시한다.
- 안전관리는 이후 아동발달에 적합한 교육으로 이어지도록 구성하고 활용한다.
- 안전관리는 자기관리와 자기돌봄이 가능한 능동적인 아동으로 교육할 수 있다.
- 안전관리는 아동발달을 위한 환경유지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 안전관리는 예방적이며 회복력을 기반으로 한 단계적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 안전관리는 준비, 대비, 대응활동이 연결되어야 한다.
- 안전관리는 시설 내・외부의 통합적인 조정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 안전관리는 예측성에 기반하며 준비성을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안전관리는 구체적이고 정확해야 한다.
- 안전관리는 연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한다.

- 안전관리는 책임성과 의무성을 기반한다.
- 안전관리는 상황중심적이어야 한다.
- 안전관리는 시설에 소속된 공동체 모두를 위한 것이다.
- 안전관리는 지식과 기술, 태도가 통합적으로 이어진 결과이다.

2) 안전관리 영역

(1) 아동시설 내 주요 안전점검 영역

구 분		점 검 시 기
일반 사항	창틀 및 문의 안전	수시 점검
	아동용품 파손관리	수시 점검
	바닥 이물질	수시 점검
	실내 환기	수시 점검
	환기, 통풍, 채광, 배수	수시 점검
	정수기	분기별 전문업체 정기 검사 실시
	쓰레기 및 폐기물	매일 점검
소방 시설	소방 설비 점검	연 1회 전문업체에 점검 의뢰
	소화기 관리	수시 점검
전기 시설	전기 설비 점검	연 1회 전문업체에 점검 의뢰
	조명 관리	수시 점검
	콘센트 관리	매일 업무 종료시 점검
	전선 관리	수시 점검
가스 시설	가스렌지 밸브	매일 업무 종료시 점검
	가스 누설 점검	연 2회 전문업체 정기 검사 실시

(2) 안전관리 점검 시기 및 방법

구 분		일 정	방 법
하·동절기 시설 안전 점검		하절기(5월) 동절기(11월)	- 시설 담당 사회복지사 및 시설 관리인 실시 - 안전 점검 실시 후 구청 희망이음 보고
시설 자율 점검	건축	매월 초	- 시설 관리인 실시 - 관련 법령 및 자체 기준에 의한 점검 - 자율점검 실시 후 내부 보관
	소방		
	전기		
	가스		
비상구 점검		매일	- 소방안전관리자 및 시설 관리인 실시

구 분	일 정	방 법
		- 자율점검 실시 후 내부 보관 - 월별 비상구 관련 교육 포함
소방시설 작동 기능점검	5월(작동) 11월(종합)	- 법정 업체 대행 - 점검 실시 후 결과 자료 내부 보관
전기안전관리	매월 1회	- 법정 업체 대행 - 저압 및 300KW이하 - 점검 실시 후 결과 자료 내부 보관
전기설비 정기검사	3년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시행 - 점검 실시 후 결과 자료 내부 보관 (전기안전여기로 사이트에서 확인 및 출력)
도시가스 정기검사	연 1회	- 법정 업체 대행 - 점검 실시 후 결과 자료 내부 보관
실내공기질 검사	연 1회	- 법정 업체 대행 - 검사 실시 후 결과 자료 내부 보관
승강기정기검사	연 1회	- 법정 업체 대행 - 연 1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검사 실시 후 검사 결과 내부 보관

(3) 분야별 안전 관리 수칙

① 실내환경

▸ 실내공간

- 실내에 분전반이 있을 경우 차단기, 전선이 충전부와 연결되어 있어 감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동이 접촉할 수 없게 가리거나 전면에 전기 위험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 피난/유도등/피난 안내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표시,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위치표시, 피난 동선 표시를 해야 한다.
- 시설 안에 폐쇄된 공간,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는다.
- 내외부 공간에 후원물품, 상자 등 위험물을 쌓아 놓지 않는다.

▸ 문/창문

- 여닫이 문보다 미닫이 문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한 방향으로 여닫도록 설치한다.
- 문틀 사이, 문틈 아래에 공간이 있는 경우 끼임 방지대를 설치한다.
- 시설 내 모든 문의 가장자리에는 아동의 손이 끼지 않도록 손 끼임방지 장치나 완충장치

가 설치되어야 한다.
- 아동들이 방안에 들어가 있을 때 문이 잠기지 않도록 잠금 기능을 제거해야 한다.
- 창문이 2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때는 창문 보호대를 설치해야 하며 창문 아래쪽에 아동들이 올라 설 수 있는 비품을 두지 않는다.
- 창문에 커튼, 블라인드가 있을경우 줄은 아동의 손이 닿지 않게 짧게 묶고 방염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벽면/바닥/모서리
- 벽면이나 천장 벽지는 석면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 벽면, 천장 도배지는 방염지를 사용한다.
- 벽면에 설치한 시계나 게시판 등은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 아동들이 걸쳐 넘어지지 않도록 문턱이나 방지턱은 낮추거나 위험하지 않다고 제거한다.
- 바닥이나 문틀을 통과하는 전선은 통행에 방해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전선 정리용 쫄대나 클립, 전선보관함을 이용하여 정리하고 모든 전선은 짧게 정리하여 아동들이 만지거나 잡아당기지 않게 해야 한다.
- 벽면 콘센트에는 안전용 콘센트 또는 안전덮개를 설치하며,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안전덮개로 덮어 준다.

▸ 화장실/세탁실
- 화장실 바닥재는 표면이 미끄럽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바닥이 미끄러울 경우 미끄럼 방지대나 물기 제거판을 설치한다.
- 화장실 바닥은 수시로 체크하고 마른걸레로 물기를 제고하여 항상 물기가 없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화장실용 신발은 미끄럽지 않은 것으로 구비한다.
- 화장실 환풍기 등을 설치하여 악취를 예방한다.
- 화장실 변기와 세면대는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와 높이를 고려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 휴지통은 수시로 청소하여 해충이나 악취를 예방하고 늘 위생적이고 청결하도록 관리한다.
- 샤워설비가 되어 있는 곳은 샤워기 줄 등을 짧게 정리하도록 한다.
- 청소를 위해 사용하는 고무장갑, 표백제, 세척제, 빗자루, 청소도구 등은 걸려서 넘어지거나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곳, 아동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 화장실 공간에 세탁기가 있을 경우 접지를 잘 관리하여 전기 감전 문제가 생기기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 주방

- 주방 도시가스 등을 사용할 경우 가스 누출의 문제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 불을 다루는 곳이므로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간이용 소방기구를 비치해야 한다.
- 음식 조리 시 아동들은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 냉장고, 밥솥, 전자렌지 등 가전제품이 과열되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한다.
- 환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조리 후 에 연기, 냄새 등이 잘 환기될 수 있도록 한다.
- 보관 음식이나 조리도구, 박스 등은 아동들이 드나들지 않은 곳이나 손대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② 실외환경

▸ 현관

- 현관문은 너무 무겁거나 두껍지 않도록 설치하여 개폐의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 여닫이문의 경우 한 방향으로만 열리도록 한다.
- 현관에는 돌출부, 문턱이 없는 것을 권장한다.
- 유리문의 경우 안전하고 깨지지 않는 강화유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문을 열어 놓을 경우 문 받힘 방지대가 있어야 한다. 소화기 등의 소방기구를 문받힘 대체 물건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자동문일 경우 자동, 수동 스위치를 설치하여 아동들이 들어올 때는 수동으로 하여 자동으로 닫히지 않도록 한다.

▸ 계단

- 계단은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여 계단의 높이와 너비, 경사 등을 아동의 신체 크기에 맞게 설치된 곳이어야 한다.
- 난간은 계단 양쪽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동의 높이에 맞춰서 제작도니 곳이 좋다.
- 계단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계단의 끝부분에 미끄럼 방지대를 설치해야 한다.

▸ 차량이동 시

- 차량 안에 안전수칙, 보호장구, 안전띠, 차량용 소화기, 비상약품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 운전자는 차량 안전점검을 하고 아동을 탑승시켜야 한다.
- 차량 운행 시에는 휴대전화, 음주 등을 절대 금해야 한다.
- 차량 운전자는 아동이 안전한 곳에서 승, 하차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차량에 탑승한 교사는 모든 아동이 하차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잠들어 있는 아동이 없는지 모든 좌석을 확인해야 한다(잠자는 아동 확인장치).

(4) 종사자의 역할

- 종사자는 아동의 안전을 위해 안전 전체 영역에 대해 항상 모든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 외부 활동의 경우 활동 전 안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아동에게 반드시 교육하고 비상시 연락방법을 주지시켜야 한다.
- 실내에서 가스, 불 등을 사용하는 요리 프로그램의 경우 종사자 2인 이상 있을 때 진행해야 한다.
- 응급처치, 식품 알러지, CCTV(비치된 곳) 촬영, 외부활동 동의서, 보험가입 현황 등을 입소시 보호자에게 확인한 뒤 반드시 받아두어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 안전관리계획서에 있는 내용을 실제로 활동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3. 안전 위기 체계

1) 안전관리 대응 방식

(1) 재난위기 연락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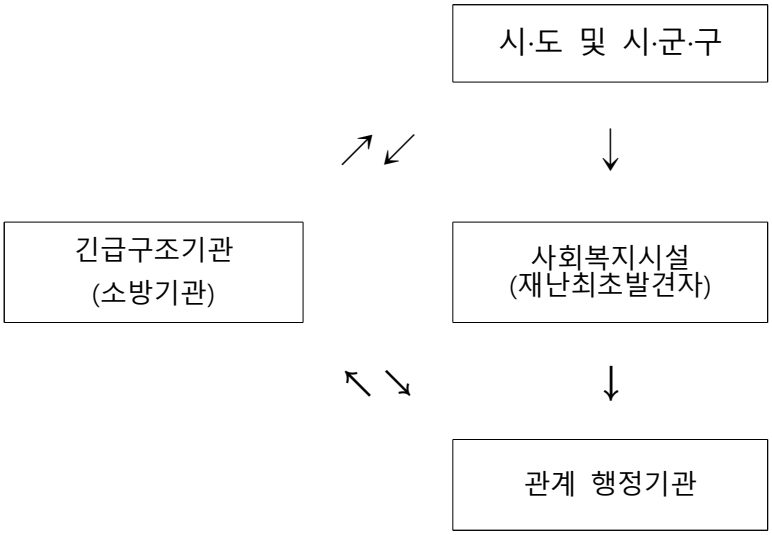

기 관	주요 임무
시·도 및 시·군·구	• 관내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지도·감독 • 관내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기·수시 지도점검, 문제시설 조치 • 안전사고 관련 예산확보 등 재정적 지원 • 시설 안전관리 교육 실시 및 비상 연락망 구축 • 사고 발생 시 시·도, 시·군·구 사고 수습본부 설치 운영(필요시) • 사고수습 후 사고 발생요인 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 시·군·구는 담당 공무원을 관내 시설의 시설 안전담당자로 지정운영
사회복지시설	• 시설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 시설 자체 안전 점검 실시 및 실시 결과 보고 • 비상 대비 모의훈련 실시, 비상 연락망 구축 • 시설 자체 응급조치 및 사후 복구체계 구축

(2) 재난위기 대응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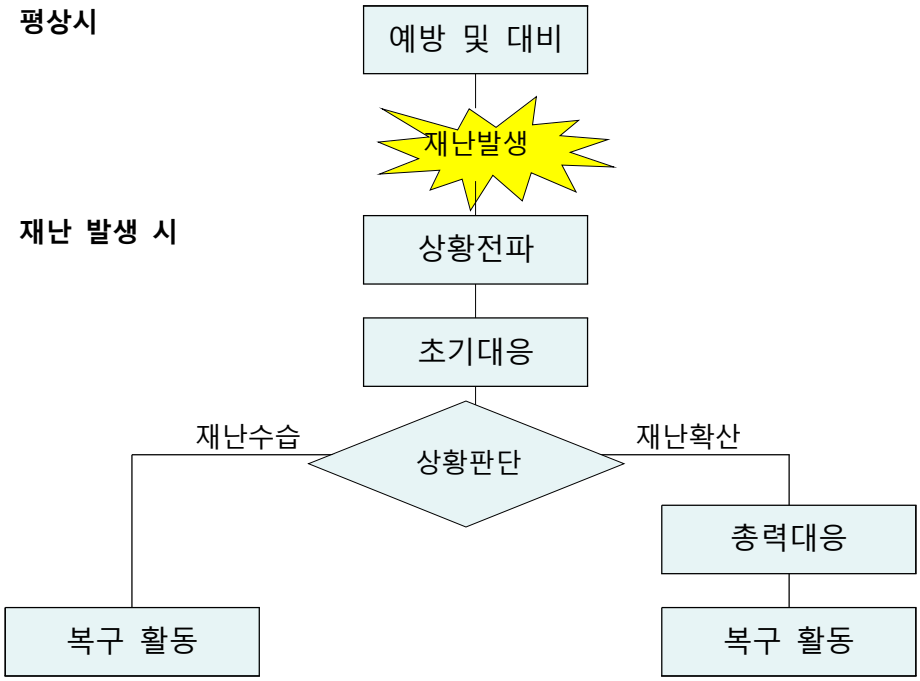

단계		담당	주요활동
평상시		- 안전관리책임자 : 시설장 - 시설종사자	- 각종 계획서 점검 - 안전 점검 - 교육 및 훈련 - 비상 연락망 최신화 - 각종 장비 비축 - 특이 상황감시 등
재난 위기 시	상황전파 (재난 임박 혹은 발생 시)	- 위기 상황을 최초로 목격한 시설종사자 - 위기 상황 신고접수를 받은 시설종사자	✓ 상황전파 활동 - 119, 112 및 유관기관신고 - 비상 연락망 가동(자위소방대 출동) - 시설 내 안내방송 - 최초 현장 대응
	초기대응	- 자위소방대장 - 시설종사자	✓ 최초 현장 대응 인력 장비 보강후 초기대응 실시 ✓ 자위소방대장은 총력대응 여부판단 및 유관기관 협업 - 119, 112 및 유관기관 수시 확인 신고

	총력대응	- 자위소방대
		  - 지휘통제반(팀)
		  - 초기소화반(팀)
		  - 피난유도반(팀)
		  - 응급구조반(팀)
		* 시설별 소방계획서에 따라 조직 구성
			✓ 유관기관 도착 시까지 총력대응
			- 총력대응(인력 및 장비) 추가 보강
			- 시설이용자 대피
			-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응급환자병원 이송
			✓ 유관기관 도착 후 협업을 통한 총력대응

복구 활동		- 안전관리책임자 - 시설종사자	✓ 응급 복구 및 피해지역 방역 실시 ✓ 피해 상황집계 ✓ 전기, 통신, 가스등 시설물복구

(3) 재난 위기 시 대응조직

< 소규모 아동 및 영유아 복지시설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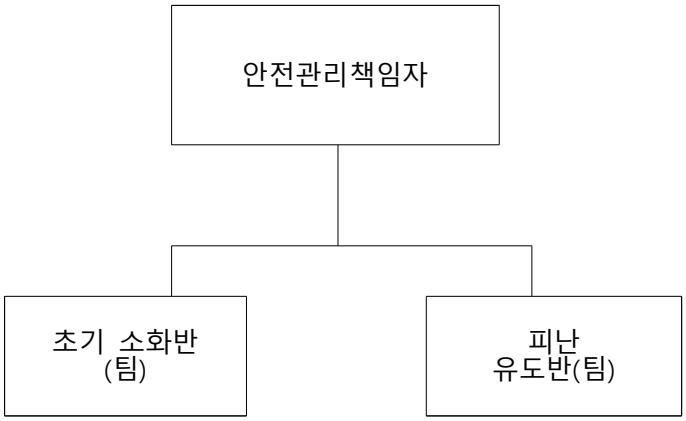

(비고)

- 각 시설별 안전관리계획서 및 소방계획서를 참고로 하여, 시설 여건에 부합하여 조직구조 및 명칭을 구성함

4. 주요법규

1) 보험 가입 여부 확인(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및 시설 이용과 관련 된 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년 손해배상보험 가입 여부 확인한다.
- 보험에 미가입하고 시설 운영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2) 재난안전 의무보험 보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 2)

- 재난안전 관리 기본법 제7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에서 정한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금액을 보상 하도록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

1.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2. 부상의 경우: 3천만원 이상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해가 생긴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3) 시설안전점검 실시(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 시·군·구 담당자는 시설장으로 하여금 매 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 수시 안전 점검을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시설 안전 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4) 안전교육 의무(아동복지법 제31조,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6조)

- 아동복지시설의 장 은 매년 안전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을 오남용 예방, 재난 대비 안전, 교통안전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 교육계획 및 실시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5)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7조 별표4)

- 피난시설 및 화재방지시설 설치, 비상약품, 구호 설비·기구 구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위험표지물 등 안내문 설치, 비상 대피경로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 긴급 수송대책 마련, 사고 후에는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시설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6) 급식 및 위생관리(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 급식위생 관리 : 아동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해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경우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 급식관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해야 한다.
- 식기, 도마, 행주, 칼, 그밖의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세척, 살균 및 소독 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해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류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음식 또는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해서는 안된다.
-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 관리해야 한다.
- 조리원 등 음식물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종사자는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조리실, 식품 등의 원료, 제품 보관실 등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 전염성 질환, 고름형성 상처 등을 가진 사람은 아동의 식사를 조리해서는 안된다.
- 아동복지시설의 먹는 물로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해야 하며 먹는 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신청해야 하고 수질검사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먹는 물 수질검사 성적서를 갖춰 두어야 한다.

7) 소방시설 설치 의무(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해 화재 방지를 위해 발화성이 높은 기구와 실내장식을 사용하지 않으며, 유독가스가 나지

않는 내연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옥내 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 화재 등 안전하고 대피계획에 따른 대피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자체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 확립 및 응급조치반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연료, 가스 등 인화성 물질과 발화성 장치의 특별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 정전을 대비한 초와 성냥, 라이터 등은 아이들 손에 닿지 않게 종사자가 직접 관리하고, 시설 내에서는 금연 및 전기・가스 기구의 개인적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 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한다.

8) 응급조치 및 안전조치 의무(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14조)

- 아동복지시설은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로서 어린이(13세 미만)가 질병, 사고, 재해의 위기에서 응급조치의무를 시행해야 하며 안전조치를 실시할 의무를 갖고 있다.
-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어린이 응급조치 의무 시행과정에서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 이송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 시설물 유지 관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21조)

- 시설물안전법 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지침을 잘 따른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따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전설업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따른다.
- 시설물 안전법 제19조에 의해 국토안전관리원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므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 안전검검 신청・접수하도록 한다.

※검검분야건축물 및 옥외시설(지반침하, 균영 및 건축마감 손상 여부, 유지관리상태 등

- 시설장 및 지자체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적극 이행하고, 조치실적이 있는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 16조의 2 제4항에 따라 그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그 외 참고할 법률 : 건축물 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Ⅱ. 안전관리 활동

1. 전기 안전관리

1) 예방 및 대비활동

[안전관리 책임자의 역할]

○ 시설에서 안전관리 책임자는 시설장이며 시설종사자 및 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전기 안전관리 예방 및 대응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전기안전의 중요성과 전기관리 방법 및 재난 시 대처요령 등을 필요에 따라 교육한다.

○ 안전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전기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 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전기 안전관리 예방 활동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전기설비 안전관리 예방 활동 점검
- 배선 쇼트(단락) 발생 예방 점검
- 오래된 콘센트 먼지로 인한 트래킹 예방 점검
- 전선 절연 노화 예방 점검
- 전선 단선 상태(반부분단선) 발열 예방 점검
▶ 난방기구(전기난로) 안전관리 예방 활동 점검
▶ 가전용품 안전관리 예방 활동 점검
▶ 배전관·전선 안전관리 예방 활동 점검

[시설종사자의 역할]

○ 누전

-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 콘센트, 스위치 박스 등 누전 위험이 있는 곳 수시로 확인
- 전선 피복이 벗겨졌는지 수시로 확인
-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전원스위치가 꺼졌는지 확인

○ 합선

- 콘센트에 문어발식 배선으로 전기 사용 금지
- 노후화된 배선의 교체
- 과전류 발생 시 전기를 차단하는 정격용량의 퓨즈 또는 차단기 설치

○ 감전

- 전기기기 및 배선 등 충전부 노출 금지
- 누전차단기 설치 및 관리
- 전기기기 스위치 조작 금지
- 물기 있는 손으로 전기기기 접촉금지

- 안전기는 반드시 정격 퓨즈 사용할 것
- 불량제품이나 고장 제품 사용하지 말 것
- 아동들이 콘센트에 장난하지 않도록 교육하기
- 세탁기 접지선을 바닥에 설치한다.

전기 안전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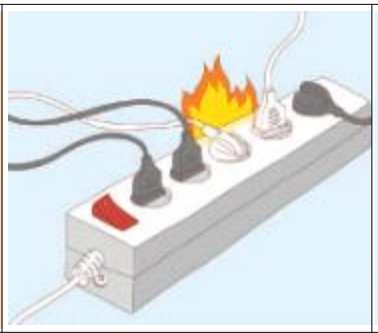	
젖은 손으로 코드 만지지 않기	문어발식으로 여러 개 코드 꽂지 않기	콘센트에 장난치지 않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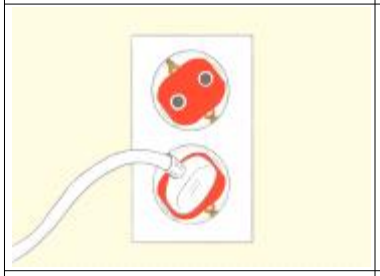		
플러그 안전장치 처리	누전차단기 점검	전기용품 접지선 확인

2) 대응활동

(1) 단순 정전의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시설 내 배전반의 누전차단기와 개폐기 동작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 내 정전의 원인을 파악한다.

○ 차단기를 올려도 바로 동작하지 않고, 다시 내려가는 경우나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않을 때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전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 정전 복구 후 정전 원인이 파악되면, 이에 대한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한다.

* 한국전력공사 24시간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 119/누전 신고 1588-7500

[시설종사자의 역할]
○ 아동이 당황하지 않도록 안정시키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전기차단으로 승강기에 시설종사자나 이용자가 갇혀있는지 확인한다.
○ 정전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전기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2) 재난 위기 시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태풍 및 집중호우 등 폭우로 인한 시설 침수가 예상되면 누전차단기의 차단 여부를 결정한다.
○ 지진, 건축물 붕괴 등의 시설물 재난 위기 시 전원 차단 여부를 결정한다.
○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전기안전사고 발생 즉시 유관기관에 연락한다.

[시설종사자의 역할]
○ 전기가 꺼지고 아동이 당황하지 않도록 안정시키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 전기스토브, TV, 전자레인지, 컴퓨터 등의 플러그를 뽑는다.
○ 랜턴을 준비하고 휴대폰을 통해 뉴스나 재해 상황을 파악한다.
○ 각종 재난으로 인한 대피 시, 시설물의 전기를 차단한다.

(3) 기타 활동
○ 현관 및 벽면에 있는 옥내 배전반의 누전차단기와 개폐기 동작 여부를 확인하여 전류 차단기 상태를 확인한다.
○ 차단기를 올려도 바로 동작해 다시 내려갈 경우는 옥내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 옥내 배전반의 누전차단기와 개폐기를 모두 내리고, 메인 차단기인 누전차단기를 올려 차단기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 특정 분기개폐기를 올릴 때 누전차단기가 동작하였다면, 특정 분기개폐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로 분기개폐기 회로만을 내려놓고 다른 개폐기는 모두 올려 점검한다.
○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않을 경우는 옥내 전등 및 콘센트 회로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전문가 점검을 받는다.

2. 가스 안전관리

1) 예방 및 대비 활동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시설종사자 및 아동을 대상으로 가스 안전관리 예방 및 대응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가스 안전의 중요성과 관리 방법 및 재난 시 대처요령 등을 필요에 따라 교육한다.

○ 가스 안전시설 등을 정기·수시적으로 점검한다.

○ 가스 사용시에는 자리를 뜨지 않도록 조리 종사원에게 확인한다.

○ 가스 사용 이후에는 코크와 중간밸브를 반드시 잠그도록 한다.

[시설종사자의 역할]

○ 가스 연소기의 상태와 안전장치 및 작동상태를 매일 확인한다.

○ 가스를 사용하기 전 새는 곳이 없는지 냄새를 맡이 확인한다.

○ 가연성 물질을 가스근처에 두지 않는다.

○ 정기적으로 검지기나 발포성 용액 등으로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한다.

○ 가스 사용 시에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창문의 개방 및 연소기 작동 시에 환기팬이 연동되는지 확인한다.

2) 대응 활동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가스누출 시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하며, 안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한국가스공사 비상계획실 031-710-0453

* 한국가스안전공사 종합상황실 043-750-1240

○ 응급조치 후 원인을 파악하고, 안전함이 확인된 후 가스 사용을 재개한다.

○ 가스누출 복구 후, 가스누출의 원인이 파악되면, 이에 대한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설종사자의 역할]

○ 가스 냄새로 가스가 새는 것을 발견하면 먼저 연소기의 점화콕과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닫아 가스공급을 차단하고, 창문과 출입문을 등을 활짝 열어 누출된 가스를 밖으로

몰아내고 신선한 공기로 환기한다.

○ LPG의 경우에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방바닥으로 가라앉으므로 침착히 빗자루 등으로 바닥을 쓸어내듯 공기를 환기한다.

○ 가스누출 부근에서 전기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가스가 누출되어 급하다고 환풍기나 선풍기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스위치 조작 시 스파크에 의한 점화로 폭발 가능성이 크다.

○ 가스누출 시 전기기구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가스 안전 위기 대응 절차				
신고하기	전기 만지지 않기	환기 시키기	가스밸브 잠그기	불 사용 안하기

3) 사후 조치 활동

(1) 가스 누출 후 환기 후 사용

○ 가스가 누출된 실내나 가스 저장소 등은 모든 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었는지 확인 후 업무를 시작해야 안전하다.

○ 누출 가스 중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바닥에 가라앉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바닥 부분의 환기를 철저히 한다.

○ 무색·무취의 가스인 경우 일반적으로 환기 후 남아있는 가스 확인이 어려우므로 주의 깊게 점검한 후 사용한다.

(2) 장마철 침수지역 안전관리

○ 도시가스 및 LPG 시설은 모두 한국가스안전공사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안전 점검을 받고 사용해야 안전하다.

○ LPG 시설의 경우 가스시설이 유실되거나 가스용기 자체가 물에 잠기게 되므로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한다.

○ 가스레인지·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복구할 때는 진흙과 같은 이물질을 깨끗한 물로

씻어 완전히 말린 후 전문가의 안전 점검을 받고 사용한다.

○ LPG 용기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조정기가 물에 젖었다는 사실을 생각지 못하고 LPG 용기에 부착된 밸브를 돌릴 경우, 조정기 내부의 고무 패킹이 찢어지면서 기능을 못 하여 용기 내부의 고압가스가 그대로 방출되거나 고압가스가 호스를 이탈시켜 가스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정기를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 물에 젖었던 가스보일러를 점검받지 않은 채 전원 플러그를 꽂으면, 보일러 내부의 기기판이 타버리는 것은 물론이며, 안전장치가 타서 가스 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침수 후 점검을 받지 않은 채 가스보일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가스보일러의 배기통에 물이 찬 것을 모르고 보일러를 가동할 경우, 보일러에서 나오는 폐가스가 실내로 유입,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며, 보일러 자체가 그을려 수명을 단축하게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조사의 A/S를 받고 사용해야 한다.

3. 화재 안전관리

1) 예방 및 대비 활동

(1) 일반 화재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시설 안전관리 책임자는 시설종사자 및 시설 이용아동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관리 예방 및 대응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화재 안전의 중요성과 전기관리 방법 및 재난 시 대처요령 등을 필요에 따라 교육한다.

○ 안전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전기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 안전관리책임자는 화재 안전관리 예방 활동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시설 내외 흡연 장소를 통제한다.

○ 인화성 물질(라이터, 성냥 등) 소지하거나 아동들이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또한 화기 장소(주방, 보일러실 등)의 출입을 통제한다.

○ 화재 방지대책 및 안전시설(소화기)을 갖춘다.

[시설종사자의 역할]

○ 화재시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처하도록 한다.

○ 주방 조리기구의 착화원 및 후드 등을 정기적으로 청소한다.

○ 화기 시설 주위의 가연물을 제거한다.

○ 요리 프로그램 진행시 아동들끼리만 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어른들의 지도감독하에 진행한다.

(2) 전기화재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전기안전 점검을 정기・수시적으로 실시한다.

○ 용량에 적합한 규격 전선 사용 및 노후 배선을 교체한다.

○ 분전함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연물 방치를 금지한다.

○ 전열기 등의 자동온도조절장치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시설종사자의 역할]

○ 퓨즈나 과전류차단기, 전선 등 정격용량 제품을 사용한다.

○ 천장 속 및 전기기기는 청소를 통해 먼지나 가루를 제거한다.

○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금지하고, 전기기기는 사용 후 플러그를 제거한다.

○ 전기장판 등 전열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3) 가스화재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가스 안전 점검을 정기·수시적으로 실시한다.

○ 가스시설 주위의 위험성 및 가연성물질 방치를 금한다.

[시설종사자의 역할]

○ 호스와 밸브 등은 비눗물을 이용하여 누설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가스시설 사용 시 장시간 자리 이탈을 금지한다.

○ 가스 사용 전 가스누설 여부를 냄새로 확인하고 환기한 후 사용한다.

○ 가스 사용 후 중간 또는 안전밸브를 닫는다.

○ 가스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중간 밸브와 메인 밸브를 잠근다.

○ 가스 점화 시 불이 붙었는지 확인한다.

화재 안전 예방		
성냥 등 불 사용하지 않기	가스 누설 등 확인	콘센트 잠금

4. 위험물 안전관리

1) 예방 및 대비 활동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시설 내외 위험한 상황이 있는지 전체상황을 점검한다.

○ 응급상황을 준비한다.

[시설종사자의 역할]

○ 시설 안에 물건을 방치하거나 쌓아놓지 않도록 한다.

○ 날카로운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모서리에 보호를 위한 방지처리를 한다.

○ 화장실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지 청소한다.

○ 위험한 물건이 아동들의 손에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 2층 이상인 곳에서는 아동들이 창문을 내려다 보거나 창문을 열지 않도록 한다. 창문아래 물건을 놓거나 밟고 올라가지 않도록 지도한다.

○ 뜨거운 음식을 들고 가다가 부딪치지 않도록 조심시킨다.

위험물 안전 예방		
물건 쌓아두지 않기	날카로운 모서리 보호장치 하기	젖은 화장실 바닥 확인하기
위험한 용품 어린 아동 손에 닿지 않도록 놓기	창문 열고 내려보거나 난간에 기대지 않기	뜨거운 음식 들고 다닐 때 조심하기

2) 대응활동

[시설종사자의 역할]

○ 아동이 위험물, 위험상황으로 인해 다치거나 문제가 생겼을때는 응급구조 매뉴얼에 제시된 사항에 따라 처치 하도록 함.

5. 승강기 안전관리

1) 예방 및 대비사항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에 시설이 있을 경우 건물관리인이 승강기 점검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승강기 점검 회사의 비상연락망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기록해둔다.

○ 안전교육을 준비한다.

[시설종사자의 역할]

○ 승강기 올바른 이용방법에 대해 아동에게 교육한다.

○ 인터폰, 비상벨, 정지스위치 등을 장난으로 조작하지 않도록 한다.

○ 승강기 버튼을 불필요하게 누르거나 난폭하게 다루지 않도록 교육한다.

○ 운행 중인 승강기 내에서 뛰거나 심한 장난을 하지 않도록 한다.

○ 승강기 출입문을 흔들거나 손으로 밀지 말아야 하며 출입문에 기대지 않도록 한다.

승강기 안전 예방		
버튼 누르고 장난치지 않기	쿵쿵 뛰거나 충격주지 않기	문쪽으로 기대지 않기

2) 대응 활동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승강기 안에 아동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즉시 신고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안전교육을 준비한다.

[시설종사자의 역할]

○ 승강기 안에 갇혔을 때 아동들에게 인터폰으로 연락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 승강기 문이 안 열릴 시에는 안에서 무리하게 문을 열지 않고 침착하게 기다리도록 교육한다.

승강기 안전 예방		
승강기 안에 갇힌 상황을 알게 되면 신고한다	비상벨을 누르고 침착하게 기다린다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지 않는다

6. 교통사고 안전관리

1) 예방 및 대비사항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시설 차량의 안전을 정기 점검하여 고장이나 정비 불량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 차량운행시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 운전자는 음주, 핸드폰 사용을 안 하도록 운전을 담당하는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한다.

[시설종사자의 역할]

○ 교통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아동들이 안전하게 승하차 하도록 지도한다.

○ 차가 완전히 정차한 후 하차하며 차 문이 열린 후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오는지 뒤쪽을 살피고 내리도록 지도한다.

○ 차량 승하차 시 주변에서 뛰지 않도록 지도한다.

○ 차량에 탑승 후에는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지도한다.

○ 차가 달릴 때 차창 밖으로 얼굴, 손, 물건 등을 내밀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지도한다.

승강기 안전 예방		
안전하게 승하차 하기	차량탑승 시 안전벨트 꼭 하기	교통안전교육 실시하기

2) 대응활동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사고가 났을 시 대처 방법을 준비한다. 신속한 조치를 통해 2차 사고를 방지한다.
○ 사고가 났을 시 갓길로 차를 이동하여 정차시킨다. 아동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한다.

[시설종사자의 역할]

○ 교통사고 시 부상당한 아동을 확인하고 신속히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 경찰이나 구급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취하게 한다.
○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부상자를 움직이지 않으며 수평을 유지하여 옮긴다.
○ 부상자가 의식이 없으면 옷을 헐렁하게 하고 무리하게 이동시키지 않는다.
○ 아동 혼자 이동시 사고가 났을 때는 반드시 112나 어른들에게 신고하도록 교육한다. 만약 휴대전화가 없다면 어른들께 전화를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도록 교육한다. 사고를 낸 차량자의 연락처를 받아 놓도록 교육한다.
○ 경미한 사고일 경우라도 아동에게 부상이 있을 경우 아동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한다.

교통사고 후 위기 대응활동		
교통사고 후 아동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경미한 사고라도 신고하기	교통사고 후 상태 파악하기

Ⅲ. 재난 및 피난활동

1. 사회재난

1) 화재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분</th><th colspan="2">유형에 따른 행동 절차</th></tr>
<tr><th>자력으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th><th>자력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th></tr>
<tr><td rowspan="5">최초 화재 발견</td><td rowspan="2">경보 전파</td><td>· 이용자
- 육성, 비상벨, 자동경보 등을 통한 근무자에게 화재 상황 전파/ 119에 화재신고
· 근무자
- 경보설비를 작동하여 건물 내 경보 전파/ 119에 화재신고</td><td>· 근무자 건물내 화재경보 전파(육성, 비상벨, 자동경부 등)
- 다른 근무자의 도움 요청
- 119에 화재신고</td></tr>
<tr><td colspan="2">· 자위소방대 비상소집 및 유관기관에 화재 상황 통보로 협조 요청</td></tr>
<tr><td>초기 소화</td><td>· 아동 : 투척용/수동식소화기
· 근무자/대응이 가능한 청소년 등
- 투척용/수동식소화기, 소화설비 등</td><td>· 근무자 : 투척용/수동식 소화기, 물등</td></tr>
<tr><td rowspan="2">대피 활동</td><td>· 아동 : 안전구역으로 이동[자력]
· 근무자 : 이용자의 피난유도/대응이 가능한 청소년 등 다른 아동의 피난 유도 및 지원</td><td>· 근무자 : 화재실내의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안전구역 또는 복도 등으로 대치
- 휠체어 직접 이동 또는 보조인의 도움 등</td></tr>
<tr><td colspan="2">· 피난층 등 대피장소를 사전에 선정하여 이용자의 원활한 피난을 유도
· 이용자가 자력에 의해 대피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한 후, 근무자는 자력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이용자부터 대피를 유도</td></tr>
<tr><td>화재 대응</td><td>소화팀 / 대피반</td><td colspan="2">· 소방대 도착 전까지 가능한 범위내에서 소화활동 실시(옥내 소화전 사용)
· 초기 소화가 불가능한 경우 화재실의 문을 폐쇄하고,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대피
· 소방대 도착 시 현재까지 상황 인계(화재장소, 미대피자 현황, 환자 발생 여부 등)
· 주된 출입문이 화재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비상구 등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여 화재로부터 이격시키고 소방대의 도움을 기다림
· 소방대 도착 후 소방대장의 통제를 받아 대피 및 구조활동 실시(소방대 도착 후에는 구급활동 위주의 임무를 수행토록 함)</td></tr>
<tr><td colspan="2">비고</td><td colspan="2">1. 세부내용은 화재 대응절차의 참조 및 시설별 특성에 맞도록 추가하여 활용한다.
2. 소방대 도착시 자위소방대의 임무는 소방대장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3. 야간 등의 화재시 초기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생활인증 자위소방대 임무수행이 가능한 인원은 위험이 적은 보조임무 위조로 편성하여 임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td></tr>
</table>

(1) 화재 단계에 따른 자위소방대 행동요령

① 최초 발생시(주간)

구분	최초 화재 발견시 (초기 진화가 가능한 경우)	초기 화재 진화 실패시 (초기 진화가 불가능 한 경우)
최초발견자	· 건물내 경보 전파- 육성, 발신기 등 · 최초 소화 활동 실시- 투척용 소화기, 수동식 소화기	· 건물 내 경보전파 – 육성, 발신기 등 자동경보
이용자	이용자 중 소화활동이 가능한 인원은 자위소방대 임무 부여(대피활동 위주로) - 해당층이나 해당 호실의 다른 이용자 피난 및 대피활동 지원	
지휘 연락반	· 지휘반은 화재 현장 지휘/통제 · 소방기관에 경보전파(119) · 자위 소방대 비상소집 준비	· 관계기관에 경보전파 · 자위소방대 비상소집 · 소화/대피/구조활동의 지휘/통제 · 소방대 도착시 화재상황 등 보고
소화 진압반	· 초기 소화활동 실시 - 수동식 소화기 등 소화기구 - 옥내 소화전 사용준비 및 호스 이동	· 옥내 소화전 등을 이용한 소화활동 · 화재실의 가연물의 제거 ·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 시 – 밸브 차단 및 용기이동, 폭발우려시 소화활동 중단 후 대피
대피 유도반	· 화재지점의 이용자를 우선적 대피(화재규모와 상관없이) · 화재지점에 이용자의 접근통제 · 피난로 확보/출입문 등의 개방	· 이용자를 안전구역을 대피/유도 · 비상구의 확보 및 피난기구 설치 · 방화문(방화셔터)등의 확보로 화재차단 및 피난로 확보
구조 구급반	· 대피유도반 지원(구급반) · 소화/진압반 지원(구조반)	· 대피 및 소화반 지원 · 응급환자 구조 및 구급활동 실시 –응급구호소로 환자 이동 응급조치, 환자분류(자체치료/후송)

② 화재의 확산(주간)

구분	최초 화재 발견시 (초기 진화가 가능한 경우)	초기 화재 진화 실패시 (초기진화가 불가능 한 경우)
이용자	이용자 중 소화활동이 가능한 인원은 자위소방대 임무 부여(구급활동 위주로) - 건물외부의 안전구역에서 구조/구급반의 임무지원(건물 내 진입은 제한)	
지휘 연락반	· 소방대장에게 지위권 이양(화재/피해상황 보고) ·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지휘/보호	· 상황보고 및 전파 체계의 지속적 확립 · 피해상황 등의 파악· · 소방대장의 지시에 따라 각반의 임무 재부여(구급활동에 중점)
소화 진압반	· 소방대장의 지시에 따라 소화활동 지원 · 대피/유도반의 임무 지원(중요물품 이송)	· 소방대장의 지시에 따라 소화활동 지원

대피 유도반	· 소방대장의 지시에 따라 대피활동 지원 · 이용자 및 외부인의 화재현장 접근 통제 · 출입구 및 비상구까지의 피난통로 확보 · 피난기구를 이용한 대피활동	· 이용자 및 외부인의 화재현장 접근 통제
구조 구급반	· 응급환자 구조 및 구급활동 실시 - 환자분류(자체치료/후송) - 응급 환자 후송	· 응급환자 구조 및 구급활동 실시 - 환자 분류(자체치료/후송) - 응급환자 후송

③ 야간 화재 및 소규모 대상물

구분	최초 화재 발견시 (초기 진화가 가능한 경우)	초기 화재 진화 실패시 (초기진화가 불가능 한 경우)
최초 발견자	· 건물 내 경보전파 – 육성, 발신기 · 조기 소화 활동 – 투척용소화기, 수동식 소화기	· 자위소방대 편성표 상의 해당임무 수행
연락반 대피 유도반	· 소방기관에 경보전파(119) · 자위소방대 비상소집 · 화재지점의 인원 우선 대피	· 이용자를 안전구역으로 대피/유도 · 방화문(방화셔터) 등의 확보로 화재 차단 및 피난로의 확보
소화반	· 최초 소화 활동 실시 - 투척용소화기, 수동식 소화기	· 옥내소화전등을 이용한 소화활동 지속 실시
비고	- 자위소방대 소집 완료시 주간 임무에 따른 각 반의 임무 수행 - 야간 등의 자위소방대 편성시 소방활동이 가능한 이용자 반영하여 편성	

(2) 화재 발생 시간대별 대응 요령

① 주간 화재

구분	확인사항
시설책임자	· 상황보고 체계확립(119, 시군구, 소방시설관리업체, 의료기관 등) · 안전시설 등에 대한 총체적 확인
소방 안전관리자	· 소방시설의 정상 유지 및 작동여부 확인 · 불필요한 화기시설의 차단 및 사용 통제(주방, 보일러실, 전열기구, 기타 화기장소) · 출입문 및 비상구의 유사시 사용가능 여부 확인 · 피난통로 확보 및 장애물 등의 비치 여부 확인
근무자	· 자동경보 실패시 대응요령 확인(발신기, 비상벨) · 화재발생 요인의 제거 및 감시(담뱃불) · 화재시에 대비한 각 개인별 임무 숙지(자위소방대 임무 참고)
이용자	· 출입문 및 비상구까지의 진입로 확인 · 불필요한 화기 등의 사용금지 · 비상벨, 투척용 소화기 등의 위치 및 사용법 확인

② 야간 화재

구분	확인사항
경보체계	· 상황보고 체계 확립(119, 시설관리업체, 의료기관 등) - 자위소방대, 관계기관 비상 연락망 확인 · 자동경보 실패 시 대응요령 확인(발신기, 비상벨 등)
안전시설	· 수신기 및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조작스위치 정상여부 확인 · 불필요한 화기 시설의 폐쇄 및 차단여부 확인(주방, 보일러실, 전열기구, 기타 화기 사용장소) · 출입문 및 비상구의 유아시 사용가능 여부 확인 · 피난통로 확보 및 장애물 등의 비치 여부 확인
기타	· 야간작업 및 화기 등의 사용여부 인수인계 · 화재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순찰 계획수립(화기 사용장소, 흡연장소 등)

화재 인지하기 및 신고하기	
화재 인지하기	화재 신고하기

(2) 소화시설

① 소화기 설치 장소 및 기준

- 소화기는 규정상, 건물 각층마다 세대별 1개 이상씩은 설치하여야 한다.
- 소형소화기(능력단위 1이상인 소화기 - 0.7kg, 1.5kg, 2.5kg, 3.3kg, 4.5kg, 6.5kg)는 보행거리로 20m 이내에 1개이상 비치해야 한다.
- 대형소화기(능력단위 A10이상, B20이상인 소화기 - 20kg,40kg,60,)는, 보행거리로 30m 이내에 1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 소화기 설치 시 문 입구나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하여 초기화재 발생시 바로 대응할수 있어야 한다.

- 복도에 설치 시에는 소화기 걸이를 이용하여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기 설치 장소	

② 소화기 사용법

▸ 분말 소화기

- 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한 손으로 소화기 몸통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손잡이 앞쪽에 있는 안전핀을 돌려 힘껏 잡아당겨 뽑는다.
- 바람을 등지고 호스를 뽑아 노즐을 잡고 불이 난 곳을 향한다.
- 손잡이 아랫부분을 잡고 불이 난 곳으로 가까이 접근하고 손잡이를 움켜잡는다.
- 불길 주위에서부터 빗자루로 쓸 듯이 분말을 골고루 분사합니다.

▸ 옥내 소화전

- 소화전의 비상버튼을 누른다.
- 소화전 안의 소방호스를 화재현장까지 끌고 간다.
- 소화전 안의 개폐밸브를 서서히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열어준다.
- 노즐을 돌려 물을 분사하고, 불길의 가장자리에서 중심부로 물을 분사해 불을 끈다.

소화기 사용법	

(4) 화재 후 사후조치 및 전원조치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한 후,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에 이를 보고한다.

○ 안전한 상태에서 시설 이용아동에 대한 입소를 결정한다.

○ 시설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 전원조치를 시행한다.

[시설종사자의 역할]

○ 시설종사자는 안전 계획서에 따라 아동에 대한 입소를 시행한다.

[전원조치 방법]

○ 재난으로 인한 시설 폐쇄의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설이용자에 대한 시설 전원조치 계획서를 수립한다.

- 평상시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여 동일 자치구 내 전원조치 가능한 생활시설을 파악한 후, 비상시 전원조치가 가능토록 협약을 체결한다.
- 동일 지역 내 시설이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구의 인접 시설과 협약을 체결한다.
- 시설이용자 및 보호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원시설 정보 및 연락처 등을 사전 공지한다.
- 시설이용자 및 보호자로부터 비상시 전원조치에 대한 동의서를 확보한다.
- 최우선으로 전원조치가 필요한 시설이용자의 목록을 준비한다.
- 전원조치 시 시설이용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용자의 정보(성명, 보호자연락처 및 건강 상태) 등이 기재된 서류 및 시설이용자용 명찰 등을 준비한다.

○ 전원조치가 진행되면 비상 연락망을 통하여 시설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 시설이용자에 대한 수송전략을 수립한다.

- 시설 소유 차량 이용 시
- 119 응급차 이용 시
- 사설 응급차 이용 시
-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시
- 시설종사자의 개인소유 차량 이용 시
- 기타 시설이용자 전원 방법 등

○ 시설이용자 전원 조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다.

2) 건축물 붕괴

(1) 예방 및 대비 활동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아동복지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 붕괴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보완한다.

○ 시설종사자 및 아동들을 대상으로 건축물 붕괴에 대한 대응 교육 및 훈련을 사전 실시한다.

○ 시설 및 주변 시설 등을 포함한 주변 지역까지 재난에 대한 위험성을 점검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예: 시설 주변 건축물 굴착공사로 인한 피해 발생 등)

○ 지자체, 소방, 응급의료 등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시 신속하게 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한다.

[시설종사자의 역할]

○ 아래의 [건축물 붕괴 징조]가 감지될 경우, 즉시 안전관리책임자 및 유관기관에 신고한다.

- 건물바닥이 갈라지거나 함몰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때
- 갑자기 창이나 문이 뒤틀리고 여닫기가 곤란한 때
- 철거 중인 구조물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염에 철강재가 노출된 때
- 바닥의 기둥 부위가 솟거나 중앙부위에 처짐 현상이 발생하는 때
- 기둥이 휘거나 대리석 등 마감재가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때
- 기둥 주변에 거미줄 형 균열이나 바닥 슬래브의 급격한 처짐 현상이 발생한 때
- 계속되는 지반침하와 석축 · 옹벽에 균열이나 배부름 현상이 나타나는 때
- 벽이나 바닥의 균열 소리가 얼음이 깨지는 듯이 나는 때

(2) 대응 활동

① 건축물 붕괴 발생이 임박할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시설종사자에게 신속하고 질서 있는 대피를 지시한다.

○ 대피 안내를 통해 시설종사자와 아동의 대피를 진행한다.

○ 유관기관에 대피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시설종사자의 역할]

○ 건축물 붕괴 발생 위기 시 아동들을 사전 계획한 지정된 장소로 즉시 대피시킨다.

○ 아동 대피 시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대피한다.

○ 낙하물에 대비해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한다.

○ 대피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대피한다.

○ 대피 시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이동 및 대피 과정에서 압사, 낙상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밖으로 나갈 때는 떨어지는 유리, 간판, 기와 등에 주의하며, 소지품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침착하게 대피한다.

② 붕괴된 건축물 내부에 있을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붕괴된 건물에서 대피하지 못한 경우 119등에 연락하여 구조를 요청하며, 주변을 살펴서 안전한 장소를 확보한다.

○ 주변에 대피하지 못한 다른 시설종사자나 아동이 있는지 확인한다.

○ 안전한 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안전한 장소로 시설종사자 및 아동을 이동시킨다.

○ 부상자를 가능한 한 빨리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응급처치를 한다.

○ 구조대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시설종사자들이 번갈아 가며 손전등을 비추거나 큰 소리로 부르거나 파이프 등을 두드리도록 한다.

[시설종사자의 역할]

○ 안전관리책임자 혹은 선임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한다.

○ 대피하지 못한 아동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으므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현 상황을 차분히 설명하고 구조될 수 있음을 확신시킨다.

○ 이동 중에는 장애물 등을 될 수 있으면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장애물을 제거할 때 추가 붕괴위험에 대비한다.

○ 구조대의 호출이 들리면 안전관리책임자 혹은 선임자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반응하고, 체력을 완전히 소진 시킬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고함을 지르지 않는다.

○ 휴대전화가 불통 구역이라도 전원을 켜두되, 배터리 절약을 위해 전원은 일정 주기로 on/off 해준다.

○ 가스 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성냥, 라이터, 난로(스토브) 등을 켜지 말아야 하며 손전등을 사용한다.

③ 붕괴된 건축물에 매몰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설종사자의 역할]

○ 불필요한 활동을 최소화하고 체온을 유지하며 고함으로 체력을 소모하지 않는다.
○ 폐쇄된 공간은 공기가 오염될 수 있으므로 입과 코를 옷이나 천으로 가려서 먼지 흡입을 최소화하여 호흡을 유지한다.
○ 규칙적으로 벽・파이프 등을 두드린다.
○ 휴대전화의 전파는 매몰자 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전원은 규칙적으로 일정 시간만 켜서 배터리를 절약한다.
○ 주변을 살펴 음식과 물을 확보하고, 구조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물과 음식을 찾아 먹으면서 체온 유지에 힘쓴다.
○ 2차 붕괴나 낙하물에 대비하여 단단한 테이블 밑이나 창문이 없는 단단한 벽체 옆이나 기둥, 안전한 공간에서 기다린다.

(3) 대피 후 행동요령

○ 전체 인원을 파악하여 미처 대피 못 한 아동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부상자를 파악하여 응급조치 후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한다.
○ 응급처치나 의료 활동은 재난 현장과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 아동이 대피 시 물품을 챙기지 못했다고 하며 다시 들어가면 인명사고 발생이 높으므로 건물 내로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 화재나 건물 붕괴로 인한 폭발과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현장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안내한다.
○ 아동에 대한 생활시설 전원조치 및 이용시설 귀가조치를 실행한다.

(4) 사후조치 및 귀가조치

① 사후조치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건축물 붕괴 위험이나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한 후,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에 이를

보고한다.

○ 안전한 상태에서 시설 아동에 대한 입소조치를 결정한다.

○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 전운조치를 시행한다.

[시설종사자의 역할]

○ 시설종사자는 안전 계획서에 따라 아동에 대한 입소조치를 시행한다.

② 전원조치 방법

○ 재난으로 인한 시설 폐쇄의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설이용자에 대한 시설 전원조치 계획서를 수립한다.

- 평상시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여 동일 자치구 내 전원조치 가능한 생활시설을 파악한 후, 비상시 전원조치가 가능토록 협약을 체결한다.
- 동일 지역 내 시설이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구의 인접 시설과 협약을 체결한다.
- 시설이용자 및 보호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원시설 정보 및 연락처 등을 사전 공지한다.
- 시설이용자 및 보호자로부터 비상시 전원조치에 대한 동의서를 확보한다.
- 최우선으로 전원조치가 필요한 시설이용자의 목록을 준비한다.
- 전원조치 시 시설이용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용자의 정보(성명, 보호자연락처 및 건강 상태) 등이 기재된 서류 및 시설이용자용 명찰 등을 준비한다.

○ 전원조치가 진행되면 비상 연락망을 통하여 시설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 시설이용자에 대한 수송전략을 수립한다.

- 시설 소유 차량 이용 시
- 119 응급차 이용 시
- 사설 응급차 이용 시
-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시
- 시설종사자의 개인소유 차량 이용 시
- 기타 시설이용자 전원 방법 등

○ 시설이용자 전원 조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다.

3) 감염병

(1) 예방 및 대비 활동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안전관리 책임자는 시설종사자 및 아동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대응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세균, 바이러스, 미생물로 부터 시설 이용자들이 감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청결에 힘쓴다.

○ 집단 감염이 의심 될 경우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에 이를 보고한다.

[시설종사자의 역할]

○ 음식물은 반드시 익혀서 조리한다.

○ 외출 후, 용변 후, 식사 전에는 아동들이 손을 깨끗이 씻는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생활화하게 한다.

○ 여름철 어패류는 가급적 5℃이하로 저온저장 또는 60℃이상으로 가열처리하거나 흐르는 수돗물에 청결히 씻은 후 가열하여 조리한다.

○ 해충에 물리지 않도록 문과 창에 방충망이나 모기장을 설치한다.

○ 기침 예절을 교육한다.

- 결핵이나 독감 같은 호흡기 감염병의 경우 기침할 때 나오는 분비물로 전염된다. 침방울은 1m 이상 날아가지 않지만 기침할 때는 2m 이상, 재채기 할 때는 6m 이상 날아간다. 따라서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도록 한다.

올바른 기침 예절 지키기		
기침이 날 때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린다. 여름에는 손바닥이 아닌 손등으로 가린다.	기침이 날 때는 손이 아닌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며, 사용한 휴지는 바로 버린다.	기침 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비누로 씻는다.

○ 손씻기 교육을 진행한다.

- 감염병은 세균, 스피로헤타, 리케차,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과 같은 여러 병원체에 의해 감염되어 발병하는 질환이며, 손을 통해 세균이 전파되기 때문에 손 씻기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올바른 기침 예절 지키기, 올바른 손씻기 방법 등의 교육을 수시로 해야 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 예방접종

- 예방접종 및 백신 접종은 특정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체내에 백신을 주입하는 과정이다. 예방접종은 공공 보건의 핵심요소로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개인과 사회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아동의 경우 병원체에 쉽게 노출되고 성인에 비해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적시에 예방주사를 접종했는지 확인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특히 공동생활이나 학대쉼터의 경우 24시간 함께 생활해야 하므로 전염이 쉽기 때문에 예방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 기본 예방접종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홍역, 볼거리, 풍진, B형 간염, 플리오 등이 있으며 추가 예방접종은 폐렴구균, 수두, 인플루엔자(독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등이다.

(2) 대응 활동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감염이 의심되는 아동이 보일 때는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다른 아동과 분리한다.

○ 시설의 단체 활동은 자제하고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한다.

[시설종사자의 역할]

○ 설사, 구토, 발열, 인후통, 발진 등 증상을 보이는 아동이 있는 경우 정확한 진단, 치료, 다른 아동과 격리를 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 증상이 있는 아동의 경우 다른 아동들과 접촉할 수 없는 시설 환경에서 격리시킨다.

○ 이후 전염병으로 확진 된 경우 접촉한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조기에 발병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시설 내 외 방역, 소독을 실시한다.

○ 아동 모두 증상이 보이는지 확인하며 마스크를 쓰게 하고 손씻기를 지도한다.

시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할 구분[1)]

구분	역할
시 (구 단위시설)	· 수시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의 지원체계 연계 구축 ·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및 확진 판정 시 보고
운영시설 (법인, 개인)	· 손소독제 비치(출입구) · 일회용 마스크 비치(출입구), 체온계 비치(출입구, 사무실, 활동실) · 내외부 방역(세균)소독 적극적 실시(손잡이, 교육 기자재, 화장실,, 에어컨, 활동실 등) · 외래방문객 (자원봉사자,학부모, 외부강사 등) 방명록 비치 · 식재료 유통기한 준수 및 보온·보냉 유지 · 식기자재 위생소독 철저(도마, 행주, 수저, 식기, 칼 등) · 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조치 후 구청 보고 · 의심환자 다수 발생 시 시설운영 중단 (출입통제 및 관계기관의 지도에 따름)
종사자	· 출근하면 열체크, 손씻기 및 손소독제 도포, 이용아동과 상담 접촉 시 마스크 하기, 외래활동 프로그램 금지 · 퇴근 후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의심증세 발생 시 출근하지 않고 병가 신청 · 확진판정 후 공가 처리 · 감염병 완치(음성 판정) 후 출근 · 교대근무자 휴게시간 준수
이용아동	· 손씻기, 기침법 등 개인위생 철저(생활용품 공동사용 자제) · 종사자와 상담 접촉시 마스크 하기 · 외출 자제 · 열체크(1일 2회이상, 생활시설의 경우 야간 1회 추가)

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 위생법에 의한 지침에 따른 역할구분

2. 자연재난

1) 지진

(1) 예방 및 대비 활동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아동복지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진 발생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보완한다.

○ 시설종사자 및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진재난에 대한 대응 교육 및 훈련을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 시설 및 주변 시설 등을 포함한 주변 지역까지 재난에 대한 위험성을 점검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예: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 가능성 등)

○ 지자체, 소방, 응급의료 등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시 신속하게 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한다.

○ 비상용품을 대피소로 옮길 수 있도록 평상시 준비한다.

[시설종사자의 역할]

○ 식량, 식수, 생필품 등을 사전에 준비한다.

○ 의료 약품 등을 준비하여 비상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다.

○ 전기는 축전지나 자가 발전시설 등을 확인한다.

○ 단수에 대비하여 예비 수원을 확보하고, 가스는 비상용 가스용기를 준비하여 둔다.

재난대비 비상용품

구분	내용
비상식량	· 3일 정도 버틸 수 있는 칼로리가 높은 초코바나 건빵, 사탕, 동결건조식품, 참치캔 등의 제품류와 생수 2-3병
체온유지 용품	· 바람막이 재킷이나 우비, 핫팩, 장갑, 양말, 미니담요 등
구조용품	· 호루라기나 야광봉, 손전등, 건전기 등의 생존용품
구급약	·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연고 등
기타	· 다용도 칼(맥가이버 칼), 휴지, 라이터, 양조, 휴대용 라디오, 생리용품, 비상금, 비상 연락망 · 중요서류는 방수가 되는 비닐에 보관

지진 위기 수준

구분	판단기준	주요활동
관심 (Blue)	· 우리나라 지역에서 규모 4.0미만의 지진 또는 최대진도 Ⅴ미만의 지진이 특정 위치에서 짧은 기간 동안 2회 이상 발생하여 상황관리 및 감시 활동이 필요한 상황 · 경계 및 심각 단계 해제 이후, 낮은 위험 수준의 여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관련기관 간 협조체계 점검
주의 (Yellow)	· 우리나라 지역에서 규모 4.0미만의 지진 또는 최대 진도 Ⅴ 미만의 지진이 특정 위치에서 짧은 기간 동안 3회 이상 발생하여, 상황관리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 경계 및 심각 단계 해제 이후, 높은 위험 수준의 여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관련기관 간 협조체계
경계 (Orange)	· 우리나라 지역에서 규모 4.0~ 4.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 우리나라 지역에서 최대진도 Ⅴ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 지진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중앙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	조치계획 점검 및 인정·물적자원 동원 준비
심각 (Red)	· 우리나라 지역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 우리나라 지역에서 최대진도 Ⅵ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 지진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확대가 예상되어 범 정부적 대처가 필요한 상황	즉각 대응태세 유지

(2) 대응 활동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지진이 감지되면 비상상황임을 알리고 대피활동을 공포한다.

○ 지진이 멈춘 후 시설 및 시설종사자의 피해 현황을 파악한다.

○ 유관기관에 피해 현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 추가 지진에 대비한 안전조치에 대한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시설종사자의 역할]

○ 지진이 발생하면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이므로 이 시간 동안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고, 테이블이 없을 때는 방석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 지진 멈춘 후, 아동과 영유아의 상태를 파악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테이블 밑으로 몸을 피하도록 유도하고, 테이블이 없을 경우 방석으로 머리를 보호하도록 한다.

○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침착하고 빠르게 불을 끄고,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하고, 가스와 전기를 차단한다.

○ 불을 초기에 진화할 기회는 3번으로 크게 흔들리기 전, 큰 흔들림이 멈춘 직후, 발화된

직후에 화재 규모가 작을 때이다.

○ 아동과 외부활동, 또는 차량으로 귀가 중 운전 중일 때에는 차량을 신속하게 평지로 이동시키고, 차에서 떨어진 곳으로 대피・이동해야 한다.

지진 대피 방법		
지진 알리기	탁자아래에서 머리 보호하기	식량, 식수, 생필품 등 비상키트 사전 준비

(3) 대피 행동 요령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재난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위기 상황이 있다고 판단되면, 유관기관에 이를 신고하고, 시설종사자에게 지정된 대피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를 지시한다.

○ 대피 안내방송을 통해 시설종사자와 시설이용자의 대피를 진행한다.

○ 유관기관에 대피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 화재 발생 시 화재 진압을 위하여 자위소방대의 협조를 요청한다.

[시설종사자의 역할]

○ 수도, 가스 밸브 및 전기를 차단하고 대피한다.

○ 아동들을 사전 지정된 대피장소로 대피를 유도한다.

○ 대피장소로 이동 중 낙하물에 의한 피해에 대비하여, 아동들이 가방이나 방석 등으로 머리를 감싸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 청소년이 있다면 저학년 아동을 돌보면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다.

○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조심스럽게 대피하도록 한다. 엘리베이터 사용은 원칙적으로 피하며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방석이나, 옷 등으로 가리고 몸을 낮추고 움직이도록 한다.

(4) 대피 후 행동 요령

[시설종사자의 역할]

○ 전체 인원을 파악하여 미처 대피 못 한 아동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부상자가 있는 경우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의식을 잃은 부상자에게는 물을 주지 않도록 한다.

○ 부상자를 파악하여 응급조치 후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한다.

○ 응급처치나 의료 활동은 재난 현장과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 아동이 대피 시 물품을 챙기지 못했다고 하며 다시 들어가면 인명사고 발생이 높으므로 건물 내로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 화재나 건물 붕괴로 인한 폭발과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현장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안내한다.

○ 시설이용자에 대한 생활시설 전원조치를 실행한다.

(5) 사후조치 및 전원조치

① 사후조치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안전하게 대피한 후,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에 이를 보고한다.

○ 시설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 시설이용자에 대한 전원조치를 결정한다.

[시설종사자의 역할]

○ 시설종사자는 안전계획서에 따라 시설이용자에 대한 전원조치를 시행한다.

○ 가스가 누출되면 가스 밸브를 잠근 후, 관계기관(지역 도시가스회사 또는 LPG 공급회사, 가스안전공사, 119)에 신속히 신고하고 전문가의 조치를 받은 다음 사용한다.

○ 전기적인 이상이 있다면 전기차단기를 내린다.

○ 가구와 가구 안, 위의 물건이 쏟아질 수 있으므로 조심히 다룬다.

② 전원조치

○ 재난으로 인한 시설 폐쇄의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아동에 대한 시설 전원조치 계획서를 수립한다.

- 평상시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여 동일 자치구 내 전원조치 가능한 생활시설을 파악한 후, 비상시 전원조치가 가능토록 협약을 체결한다.

- 동일 지역 내 시설이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구의 인접 시설과 협약을 체결한다.
- 시설이용자 및 보호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원시설 정보 및 연락처 등을 사전 공지한다.
- 시설이용자 및 보호자로부터 비상시 전원조치에 대한 동의서를 확보한다.
- 최우선으로 전원조치가 필요한 시설이용자의 목록을 준비한다.
- 전원조치 시 시설이용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용자의 정보(성명, 보호자연락처 및 건강 상태) 등이 기재된 서류 및 시설이용자용 명찰 등을 준비한다.

○ 전원조치가 진행되면 비상 연락망을 통하여 시설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 시설이용자에 대한 수송전략을 수립한다.
- 시설 소유 차량 이용 시
- 119 응급차 이용 시
- 사설 응급차 이용 시
-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시
- 시설종사자의 개인소유 차량 이용 시
- 기타 시설이용자 전원 방법 등

○ 시설이용자 전원 조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다.

2) 태풍, 호우, 대설

· 태풍으로 강풍, 풍랑, 해일 등으로 시설의 파손·훼손과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하천 범람, 산사태, 매몰 등의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 대설로 인한 결빙, 동파, 매몰 등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자연재해		
태풍	호우	대설

(1) 예방 및 대비 활동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아동복지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 자체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시설종사자 및 아동들을 대상으로 태풍 및 호우, 대설 재난에 대비한 예방, 대응 교육 및 훈련을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 시설 및 주변시설 등을 포함한 주변 지역까지 재난에 대한 위험성을 점검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예: 태풍이나 집중호우, 대설로 인한 건물붕괴 및 산사태 가능성 등)

○ 시설 내 건축물과 주변 배수구, 하수관 등 배수시설의 점검을 실시한다.

○ 침수 위험 지구를 파악하고, 침수 위기 시를 대비하여 모래주머니를 적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대설시 미끄럼 방지용으로 사용 할 덮개나 염화칼슘 등을 구비해 놓는다.

○ 강풍으로 날아갈 수 있거나 무너질 수 있는 시설물을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 지자체, 소방, 응급의료 등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시 신속하게 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한다.

○ 비상용품을 대피소로 옮길 수 있도록 평상시 준비한다.

[시설종사자의 역할]

○ 지속적인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를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 강풍으로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을 파악하고 이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침수, 건물붕괴가 예상되는 저층 건물 내의 중요 물품에 대하여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식량, 식수, 생필품 등을 사전에 준비한다.

○ 의료 약품 등을 준비하여 비상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다.

○ 전기는 축전지나 자가 발전시설 등을 확인한다.

○ 단수를 대비하여 예비 수원을 확보하고, 가스는 비상용 가스용기를 준비하여 둔다.

태풍 기상 특보 구분

구분	판단기준
주의보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될 때
특보	태풍 경보 :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 될 때 ·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호우 기상 특보 구분

구분	판단기준
주의보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특보	3시간 강우량이 9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대설 기상 특보 구분

구분	판단기준
주의보	24시간 신적설(정해진 시간-6시간, 24시간 등-에 내려 쌓인 눈의 높이)이 5cm 이상 예상될 때
특보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 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태풍 호우 위기 수준

구분	발령기준 및 재난상황	조치사항
관심 (Blue)	· 태풍/호우 빈발 시기 ·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태풍의 발생	· 징후 감시활동(기상관측 및 예보 모니터링) ·태풍 위기경보
주의 (Yellow)	·태풍 예비특보 또는 태풍주의보가 발령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호우 예비특보 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고 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재난상황 모니터링 ·재난위기상황판단 및 위기경보발령 접수 및 전하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대처상황 수시 확인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확인(소방서, 지방자치단체) ·복지시설 피해우려지역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확인
경계 (Orange)	·태풍경보가 발령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호우 경보가 발령되고 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재난상황 정보수집 및 전파 ·재난위기상황판단 및 위기경보발령 접수 및 전파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근무상황과 대처상황 확인 ·사회복지시설의 피해 우려지역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확인
심각 (Red)	· 태풍경보가 발령되고 태풍에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	·재난상황 정보수집 및 전파 ·재난위기상황판단 및 위기경보발령 접수 및 전파 ·유관기관별 협조체계 점검·확인 ·학교시설물 피해 우려지역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지시 및 확인

대설 재난 위기경보

구분	판단기준	주요활동	비상단계
관심 (Blue)	· 대설 빈발 시기 ·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대설의 발생	징후 감시활동	초기대응 단계
주의 (Yellow)	· 대설 예비특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되고 대설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협조체계 가동	중대본 비상1단계
경계 (Orange)	· 대설경보가 발표되고 대설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대비계획 점검	중대본 비상2단계
심각 (Red)	· 대설경보가 발표되고 대설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	즉각 대응태세 돌입	중대본 비상3단계

(2) 대응활동 및 대피 행동 요령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재난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위기상황이 있다고 판단되면, 유관기관에 이를 신고하고, 시설종사자에게 지정된 대피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를 지시한다.

○ 대피 안내방송을 통해 시설종사자와 시설이용자의 대피를 진행한다.

○ 유관기관에 대피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한 후,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에 이를 보고한다.

[시설종사자의 역할]

○ 아동들을 사전 지정된 대피장소로 대피를 유도한다.

○ 청소년 및 고학년 아동에게 저학년 아동 및 영유아를 돌보면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다.

○ 저학년 아동들이 손을 잡고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수도, 가스 밸브 및 전기를 차단하고 대피한다.

(3) 대피 후 행동 요령

○ 전체 인원을 파악하여 미처 대피 못 한 아동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부상자를 파악하여 응급조치 후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한다.

○ 응급처치나 의료 활동은 재난 현장과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 아동이 대피 시 물품을 챙기지 못했다고 하며 다시 들어가면 인명사고 발생이 높으므로 건물 내로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 시설이용자에 대한 생활시설 전원조치 및 이용시설 귀가조치를 실행한다.

(4) 사후조치 및 귀가조치

① 사후조치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안전하게 대피한 후,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에 이를 보고한다.

○ 상황이 종료 된 후 아동에 대한 입소조치를 결정한다.

○ 시설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 전원조치를 시행한다.

[시설종사자의 역할]

○ 시설종사자는 안전계획서에 따라 시설이용자에 대한 진원조치를 시행한다.

② 전원조치

○ 재난으로 인한 시설 폐쇄의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설이용자에 대한 시설 전원조치 계획서를 수립한다.

- 평상시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여 동일 자치구 내 전원조치 가능한 생활시설을 파악한 후, 비상시 전원조치가 가능토록 협약을 체결한다.
- 동일 지역 내 시설이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구의 인접 시설과 협약을 체결한다.
- 시설이용자 및 보호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원시설 정보 및 연락처 등을 사전 공지한다.
- 시설이용자 및 보호자로부터 비상시 전원조치에 대한 동의서를 확보한다.
- 최우선으로 전원조치가 필요한 시설이용자의 목록을 준비한다.
- 전원조치 시 시설이용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용자의 정보(성명, 보호자연락처 및 건강 상태) 등이 기재된 서류 및 시설이용자용 명찰 등을 준비한다.

○ 전원조치가 진행되면 비상 연락망을 통하여 시설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 시설이용자에 대한 수송전략을 수립한다.

- 시설 소유 차량 이용 시
- 119 응급차 이용 시
- 사설 응급차 이용 시
-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시
- 시설종사자의 개인소유 차량 이용 시
- 기타 시설이용자 전원 방법 등

○ 시설이용자 전원 조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다.

3) 폭염, 한파, 황사

· 폭염은 매우 높은 기운이 지속되어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열사병이나 열부종, 열실신 등의 문제가 발생 될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 · 한파는 겨울철에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는 현상으로 인체와 시설물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황사는 바람에 의해 불려 올라간 미세한 모래 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현상으로 호흡 및 신체 피해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

자연재해		
폭염	한파	황사

(1) 예방 및 대비 활동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아동복지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시설종사자 및 아동들을 대상으로 폭염, 한파, 황사 재난에 대비한 예방, 대응 교육 및 훈련을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 심한 재난시에는 외부활동을 피하도록 하고 시설 휴원 등도 고려하며 운영시간 및 이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비상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 폭염시에는 폭염 대비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아동 및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 시설 및 주변 시설 등을 포함한 주변 지역까지 재난에 대한 위험성을 점검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예: 폭염이나 한파로 인한 응급상황 및 건강 문제 등)

[시설종사자의 역할]

○ 시설 내외 냉·난방기구, 창문 개폐 상황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준비한다.

○ 의료 약품 등을 준비하여 비상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다.

○ 신속한 보고, 피해 상황 파악 및 초기 대응조치를 시행한다.

○ 지속적인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를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 시설물이나 아동의 파악하고 이를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폭염, 한파, 황사 발생에 따른 시설 이용자 피해 최소화 및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 신속한 초동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한다.

폭염 특보 기준

구분	판단기준
폭염주의보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혹염	일최고기온이 38℃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극염	일최고기온이 40℃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역대 치고기록 41℃(2018.8.1.홍천)

한파 특보 기준

구분	특보발령 기준	
주의보	10월~4월 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이상 하강하여 3℃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경보	10월~4월 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이상 하강하여 3℃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이 -15℃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 될 때

황사 위기 수준

구분	내용
황사 예보기준	· 옅은 황사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농도가 400 ㎍/㎥미만 · 짙은 황사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농도가 400~800 ㎍/㎥ · 매우 짙은 황사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농도가 800 ㎍/㎥ 이상
황사 특보기준	· 황사주의보 : 1시간 평균 농도가 400 ㎍/㎥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 예상 시 · 황사경보 : 1시간 평균 농도가 800 ㎍/㎥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 예상 시

폭염 재난 위기경보

구분	조치사항	주요활동	비상단계
관심 (Blue)	· 폭염 대책기간(5.20~9.30)	징후 감시활동	상시 대비단계
주의 (Yellow)	· 일부 지역에서 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협조체계 가동	사전대비 단계
경계 (Orange)	· 지역적으로 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또는 일부지역에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대비계획 점검	
심각 (Red)	· 지역적으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또는 일부지역에서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즉각 대응태세 돌입	중대본 비상1단계
	· 광역적으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또는 지역적으로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될 때		중대본 비상2단계
	· 전국적으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또는 광역적으로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중대본 비상3단계

한파 재난 위기경보

구분	판단기준	주요활동	비상단계
관심 (Blue)	· 한파 대책기간(11.15~ 다음해 3.15)	징후 감시활동	상시대비단계
주의 (Yellow)	· 일부 지역에서 한파주의보가 발령되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협조체계 가동	사전대비 단계
경계 (Orange)	· 지역적으로 한파경보가 발령되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비계획 점검	
심각 (Red)	· 지역적으로 한파경보가 발령되고 당분간 지속될 거승로 예상되는 경우	즉각 대응 태세 돌임	행안부 비상단계
	· 광역적으로 한파경보가 발령되고 당분간 지속될 거승로 예상되는 경우		중대본 비상1단계
	· 전국적으로 한파경보가 발령되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중대본 비상2단계

황사 위기경보

구분	판단기준
관심 (Blue)	· 황사 빈발 시기 ·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황사의 발생
주의 (Yellow)	· 황사 예비특보 또는 황사주의보가 발령되고 황사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경계 (Orange)	· 황사경보가 발표되고 황사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심각 (Red)	· 황사경보가 발표되고 황사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

(2) 대응 활동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폭염, 한판, 황사의 위험상황이 발생되면 지자체, 소방, 응급의료 등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시 신속하게 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한다.

○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과 그에 따른 초동대응 조치로 발생 초기의 혼란 방지, 2차 피해 최소화 및 조기복구를 유도한다.

(3) 사후조치 및 귀가조치

① 사후조치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재난이 심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하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에 이를 보고한다.

○ 상황이 종료 된 후 아동에 대한 입소조치를 결정한다

○ 시설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 전원조치를 시행한다..

[시설종사자의 역할]

○ 시설종사자는 안전 귀가조치 계획서에 따라 시설이용자에 대한 귀가조치를 시행한다.

② 전원조치

○ 재난으로 인한 시설 폐쇄의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설이용자에 대한 시설 전원조치 계획서를 수립한다.

- 평상시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여 동일 자치구 내 전원조치 가능한 생활시설을 파악한 후, 비상시 전원조치가 가능토록 협약을 체결한다.

- 동일 지역 내 시설이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구의 인접 시설과 협약을 체결한다.
- 시설이용자 및 보호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원시설 정보 및 연락처 등을 사전 공지한다.
- 시설이용자 및 보호자로부터 비상시 전원조치에 대한 동의서를 확보한다.
- 최우선으로 전원조치가 필요한 시설이용자의 목록을 준비한다.
- 전원조치 시 시설이용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용자의 정보(성명, 보호자연락처 및 건강 상태) 등이 기재된 서류 및 시설이용자용 명찰 등을 준비한다.

○ 전원조치가 진행되면 비상 연락망을 통하여 시설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 시설이용자에 대한 수송전략을 수립한다.
- 시설 소유 차량 이용 시
- 119 응급차 이용 시
- 사설 응급차 이용 시
-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시
- 시설종사자의 개인소유 차량 이용 시
- 기타 시설이용자 전원 방법 등

○ 시설이용자 전원 조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다.

Ⅳ. 안전관리 계획서

소방계획서

1. 목적

이 계획서는 시설의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3. 적용범위

1) 이 계획은 시설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상시 거주·근무인원 및 이용아동과 방문자에 대해 적용한다.

2) 이 계획은 화재로 인한 재난의 예방·완화, 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 대해 적용한다.

4. 문서작성 및 기록관리

1) 소방계획의 수립 시 대상물의 안전정책, 내부규정 및 다른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검토하여 반영한다.

2) 차기년도 소방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내부결재 후 시행한다.

3) 소방계획은 반드시 문서종이, 전자문서 등으로 작성하여 2년간 사무실에 보관한다.

5. 일반현황 등의 작성

소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건축물의 현황 및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사항(부록)을 작성·관리하고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를 게시한다.

구 분	건축물 일반현황
명 칭	0000
도로명주소	00시 000
연 락 처	□관리주체 000 □ 책임자 000 □ 연락처 010-0000-0000
규모/구조	□건축면적 _____㎡(건물전체) ___㎡(시설 면적) □ 연면적_____㎡_
	□층수 지상 ___층 /지하 ___층
	□ 구조 _철근콘크리트구조_ □ 지붕 _스라브_
	□ 용도 _____
인 원 현 황	□ 근무인원 0 명
	□아동 00 명(신고인원)

소방관리현황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 임 현 황	성명	선임일자	성명	선임일자
	000	. . .	000	. . .
	☎ (유선) _____ (휴대전화) _____			
화 재 보 험	가입기간	보험사명	가입대상	가입금액
	~			1인당 (원) 1사고당 (원)
	~			1인당 (원) 1사고당 (원)

6. 소방・안전 시설 설치 의무사항

	구분	대상 사회복지시설
소화 설비	소화기구	연면적 33㎡
	스프링쿨러	600㎡ 이상
	간이스프링클러	생활시설 300~600㎡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400㎡
	자동화재속보설비	생활시설, 그 외 500㎡ 이상 층이 있는 시설
	시각경보기, 가스 누설경보기	모든 시설
피난보조설비	피난기구	모든 층(피난층, 1~2층, 11층 이상 제외)
	유도등, 유도표지	모든 시설
	비상조명등	지하층 또는 450㎡ 이상 상층

7. 소방시설 안전점검

「화재예방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아래와 같이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시설의 파손 및 정상 작동여부와 설치 누락 변경여부이며 이를 시기를 정하여 실시한다.

※ [사용승인일 : 년 월 일]

구 분	점 검 시 기	점 검 방 식
□ 비치상태 및 설치누락 정도 점검	매월 0일	□ 자체 □ 외주
□ 파손 및 작동기능점검	매월 0일	□ 자체 □ 외주

8. 일상 관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완화를 위해 일상적 안전관리 활동을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1) 일상적 안전관리계획(체크리스트 참조)

구 분	관 리 항 목	관 리 주 기				관리계획
		일	주	월	분기	
안 전 점 검	전기, 가스, 전열, 냉난방, 가전, 안전장치 등					정·부 담당자 정기정검 및 보완
소 방 점 검	소화기, 유도등, 피난로 장애물 등					정·부 담당자 정기정검 및 보완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대리자 지정현황

작성일자	대리자 성명	대리기간	지정사유	확인(관계인)
2025. . .		안전관리 담당자 부재 시		
2025. . .				

사유 : 책임자*의 여행,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퇴직과 동시에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지정(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 소지자 또는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

3) 교육계획 및 결과

교육훈련은 모든 근무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결과를 평가한 후 작성한다.

9. 화재예방 및 홍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홍보방법	계 획	홍보방법	계 획
□ 홍보주간(기간) 운영	안전교육시	□ 홍보물(리플렛, 스티커) 배부	수시
□ 포스터, 표어 전시	필요시	□ 현수막, 배너 설치	1년 1회
□ 영상물 상영	안전교육시	□ 모바일 App, SNS 활용	수시
□ 체험시설(체험관)견학	필요시	□ 구내 캠페인 방송	필요시
□ 문서, 이메일 공지	수시	□ 기타( )	필요시

10. 아동복지시설 화재 시 대응 행동 절차

화재시 신속하고 명확하게 대응절차에 의해 행동하며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과정	담당자	내 용
상황	-	예) 프로그램실에서 화재 발생
⇓		
발견자	발견자	불이야~ 불이야~ 외치기
⇓		
신고	000	사이렌 경종 울리고, 119로 신고하기
⇓		
차단	000	전기 차단기 및 가스차단기 내리기
⇓		
진압	000	투척소화기를 화재발생 장소에 던지고 분말 소화기를 찾아 화재 진압 하기
⇓		
대피	000	불이 났음을 큰 소리로 알리고 아동과 직원을 시설 현관문으로 이동시키기 ※대피요령 : 코와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벽을 짚으며, 몸을 최대한 낮춘다.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 및 비상구로 대피하며 교사의 인도에 따라 한 방향으로 이동해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한다. (가방이나 옷을 챙기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고 대피)
⇓		
구급	000	구급상자를 챙기고, 아동 대피 실시
⇓		
확인	000	아동과 직원 모두 대피했나 확인하기
⇓		
집결	000	약속된 피난처에 모두 모이기
⇓		
구급	000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11. 신고요령

- 화재를 인지하게 되면 불이 났음을 파악한다. 소화기나 물 등을 이용하여 초기소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소방관서에 화재신고를 한다.
- 큰소리로 “불이야“를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들에게 화재사실을 알린다.
- 화재신고(119)를 할 때에는 침착하게 화재발생 장소, 주소, 주요건축물 또는 목표물, 화재의 종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침착한 신고를 위해서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전화기 가까운 곳에 집주소나 주요건축물 또는 목표물 등을 적어서 부착시켜 놓고 보면서 신고하면 효과적이다.

구 분	대응방법 및 절차
화재경보	**화재경보방식에 따라 화재경보** ☑ 일제경보방식 : 전층[0 ~ 0 층] 화재경보 ☐ 우선경보방식 : 발화층 화재경보
상황전파	**화재상황 전파 시 다음 방법에 따라 상황전파** ☑ 육성 ☑ 경종 ☐ 비상방송(자동/수동) ☑ 시각경보기 ☑ 자위소방대 비상소집(비상방송 및 비상연락망)
화재신고	최초 발견자 또는 종사자가 119로 신고

12. 화재시 대응요령

화재시 대응 요령 절차도

화재발생	⇨	119에 신고
⇩		
초기소화 및 대피활동	⇨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진화 시도 대피활동 지시 및 전개 자위소방대 비상소집
⇩		
초동 진화작업	⇨	소화기, 소화전으로 초동 진화작업 시행 소방대 도착 전까지 대피활동 전개 화재확산 방지 대책 전개 인명 구조활동 전개
⇩		
소방대 도착 시	⇨	소방대장에 현재까지 상황보고 소방대장 지시에 따라 소방 활동 전개
⇩		
화재 진화 후	⇨	인원 및 부상자 확인 건축물 내 임의 진입 금지 환자 이송 및 의료 활동 지원

13.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자위 소방대 및 초기 대응체계를 아래와 같이 구성·운영해야 한다.

1 조직개요		
편 성	자위소방대	☑ 편성인원 : 대장 0명, 부대장 0 명, 대원 0 명 ☑ 조직구성 ☑ 지휘통제팀(명) ☑ 현장대응팀(명)
	초기대응체계	☑ 편성인원 : 명
운영시간		☑ 주간편성(09:00 ~ 19:00)

2 자위소방대 대원편성 및 임무현황		
구 분	성 명	개별임무
지휘반	시설장 000	소방안전계획의 수립 및 확인 각 반의 임무 및 숙달 상태 확인 안전시설 등의 정기 점검 및 정비 확인 기타 화재 예방에 대한 총괄 임무수행
연락반	시설장 000	화재 시 대비한 임무 확인 및 숙지 : 유관기관연락
소화진압반	시설종사자 000	화재 시 대비한 임무 확인 숙지 : 소화/진압 장비 사용법 확인
대피 유도반	시설종사자 000	화재 시 대비한 임무 확인 숙지 : 피난로 및 비상구의 위치 확인, 피난기구 사용법 확인
구조구급반	시설종사자 000	화재 시 대비한 임무 확인 숙지 : 구조/구급 장비 비치 및 확인

자위소방대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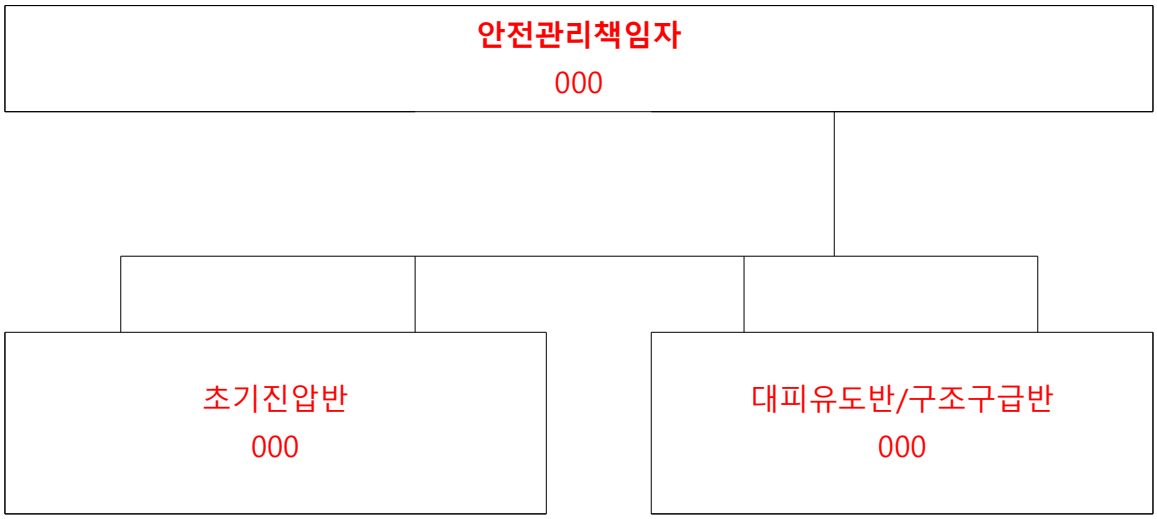

14. 비상 연락망 및 보고체계 구축

구분(기능)	기관명	연락처
관할소방서 (화재진압)	00소방서 (화재발생시 119로 신고하는 것이 신속하게 접수 가능)	0000-0000(민원실) 0000-0000(상황실) 119
의료기관	000병원	
	000병원	
	000병원	
	000병원	
	00구보건소	
경찰서 (주변통제)	00경찰서	000-000원실)
	00경찰서	000-0010 (민원실)
관할 지자체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	00구청 과	0000-0000
관련기관	법인 및 연합회	000-000
가스·전기 (가스.전기시설관리)	전기안전공사	00-000-000
	가스안전공사	00-000-000

15. 초기대응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 시 필요한 초기소화, 응급구조 및 방호안전조치 등 초기대응 절차를 사전에 수립한다.

1) 초기대응장비

구 분	종류(형식)	위치(수량)	비 고
소화설비	ABC분말소화기	전층(0개)	일반화재 적용
	청정가스 소화기	통신실(0개/전기실(0개)	2인 1조 사용
	옥내소화전	주차장(0개),각층(0개	2인 1조 사용
	스프링클러	주차장(전체)	□자동조작 □수동조작
비 고			

2) 초기대응절차

구분	대응조치	대응절차
초기 소화	☑ 초기소화(소화기, 소화전) ☑ 소화설비 기동(스프링쿨러)	■ 진압반 현장 출동 및 대응 ■ 화재 현장에서 초기소화
응급 구조	☑ 출혈 ☑ 화상 ☑ 골절 ☑ CPR(심폐소생술) ☑ AED(자동제세동기)	■ 구조구급반 현장 출동 및 대응 ■ 응급환자 발생 시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 ■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
방호 안전	☐ 화세차단(방화문 폐쇄) ☑ 위험물질 공급차단(가스, 전기) ☐ 중요물품 비상반출	■ 지휘반 현장 출동 및 대응 ■ 화재구역 화세차단 및 가스공급 차단밸브(기계실) 수동폐쇄 조치
비고. 가스 긴급차단밸브 위치 : 0층 외부(예-냉난방 실외기 옆)		

16. 화재 피해복구

화재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정상상태로 복귀하기 위해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다.

1) 피해복구(단기・장기복구)

화재로 인한 피해 복구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장/단기 피해복구 계획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주 요 내 용	
단기복구	■ 화재원인 및 피해현황 조사	■ 시설 정비 및 보수절차
	■ 화재현장 복구(Clean-Up)	■ 임시 숙소 및 영업장 마련
장기복구	■ 의료 및 심리치료 지원	■ 기반시설 복원 및 안전진단
	■ 법률 상담 및 재정 지원	■ 화재보험처리 및 피해보상

2) 피해복구 지원

화재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기관, 지원내용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구 분	지원내용	연락처
00소방서	■ 피해지원(화재증명원 발급)	02-0000-0000
대한적십자사(00지사)	■ 생필품 지원(긴급생계대책)	02-0000-0000
화재보험(사회복지공제회)	■ 화재보험금 지급	02-0000-0000
세제지원(00세무서)	■ 국세, 지방세 지원	02-000-0000

전기안전공사 (000지사)	▪ 전기시설 안전점검	02-0000-0000
가스안전공사	▪ 가스설비 응급복구	02-0000-0000

피난계획서

1. 목적

피난계획서는 평상시 계획된 대피훈련을 통하여 화재나 기타 재난으로부터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2. 적용근거

○「건축법 시행령 」 : 아동복지시설의 피난시설 기준은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기구를 설치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 : 피난층, 지상 1층, 지상2층, 층수가 11층 이상에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3. 적용범위

○ 이 계획은 000 시설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상시 거주·근무인원 및 이용아동과 방문자에 대해 적용한다.

○ 이 계획은 화재로 인한 대응차원의 피난과정에 대해 적용한다.

4. 피난 계획 및 피난유도 내용

1) 피난계획 수립

- 비상구의 위치, 피난경로, 집결지를 정한다.
- 피난 안내도 만들고 잘 보이는 위치에 게시한다.
- 피난 책임자를 지정하고 역할분담을 실시하여 비상 발생시 적절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며 이때 실제상황과 유사하게 진행하여 실제발생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연기가 많은 환경을 대비하여 마스크나 비상조명 등을 구비해두면 좋다.
- 비상 상황에서 피난 유도의 성공은 사전 준비와 계획, 그리고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에 달려 있다. 따라서, 상황에 맞게 피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갱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피난절차

- 피난경보 알린다.

- 피난 활동을 개시한다.
- 피난 도우미의 지시를 따라 안전하게 피난한다.
- 피난계단(주, 보조계단)을 통하여 신속하게 아래층이나 윗층으로 대피 하도록 유도하고, 피난계단을 통하여 대피한다.(엘리베이터 절대 이용안됨)
- 출입문에 손을 대어본 후 만약 문밖에 연기와 화기가 없다고 생각이 들 때에는 어깨로 문을 떠받친 다음 문쪽의 반대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숨을 멈춘 후 조심해서 비상구나 출입문을 열고 대피한다.
- 연기 속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에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낮은 자세로 엎드려 신속하게 대피하여야 한다.
- 화염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 등을 뒤집어쓰고 가야한다.
- 고층 건물이나 복합, 지하상가 화재 시에는 안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통로의 유도 등을 따라 낮은 자세로 침착하고 질서있게 대피하여야 한다.
- 몸이 불편한 아동이나 장애들이 있는 아동 등 특별 보호가 필요한 이용자를 위한 피난계획을 따로 마련하여 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미리 정해놓은 집결지로 안전하게 움직힌다.

3) 피난 후 안전관리
- 집결장소에서 인원을 파악한다.
- 피난하지 못한 인원이 있으며 긴급하게 구조대원에게 이용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한다.
- 이용자들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를 살펴보고 이상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한다.
-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며 이용자들끼리 안정감을 찾도록 배려한다.

5. 피난활동

1) 대피 요령

○ 시설 내 화재, 지진이나 가스 누출 등의 재난 사고가 발생 시 그 건물구조에 익숙한 사람이 적절한 피난유도를 해야 한다.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피난 계획을 세워두어야 하며 평소 피난통로의 확보와 피난유도 훈련을 철저히 실시한다.

○ 건물 내부에 피난통로를 설치하여 유사시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피난 유도시에는 가급적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차분하고 침착하게 행동하도록 한다.

○ 피난계단(주, 보조계단)을 통하여 신속하게 아래층이나 윗층으로 대피 하도록 유도하고, 피난계단을 통하여 대피한다(엘리베이터 절대 이용 안 됨).

○ 출입문에 손을 대어본 후 만약 문밖에 연기와 화기가 없다고 생각이 들 때에는 어깨로

문을 떠받친 다음 문 쪽의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숨을 멈춘 후 조심해서 비상구나 출입문을 열고 대피한다.

○ 연기 속을 통과하여 대피 할 때에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낮은 자세로 엎드려 신속하게 대피하여야 한다.

○ 화염을 통과하여 대피 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 등을 뒤집어쓰고 가야 한다.

○ 고층 건물이나 복합, 지하상가 화재 시에는 안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통로의 유도 등을 따라 낮은 자세로 침착하고 질서 있게 대피하여야 한다.

○ 피난시설 및 피난기구 없이 아래층으로 대피할 때는 커튼 등으로 줄을 만들어 타고 내려간다.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 할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려야 하며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 피난 과정 이후 집결되는 장소가 어디인지 파악하여 훈련한 대로 움직인다.

피난활동	
연기나 있을 경우 입과 코를 젖은 수건으로 가리고 몸을 낮춘 후 벽을 잡고 비상구로 대피한다.	대피장소에 모여서는 인원파악을 하며 지도자의 지시를 따른다.

2) 피난 유도요령

○ 책임자가 피난 개시를 명령하면 계획대로 아동들에게 피난 유도를 실시한다.

○ 피난자에게는 엘리베이터 탑승을 차단하고 계단으로 유도하여 집결장소로 안내한다.

○ 남은 인력은 화재 현장의 밀폐 장소를 철저히 검색하여 숨어 있는 피난자를 찾는다.

○ 피난 후에는 전체인원을 파악하여 피난 못한 아동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응급처치 및 의료활동은 재난현장과 충분히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 피난 후 부상자가 발생되면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한다.

3) 피난하지 못한 아동 색출요령

○ 화재 시 피난하지 못한 아동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긴급하게 아동을 찾기 위한 노력을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아동이 자주 가는 장소 확인: 아동이 자주 머무는 장소나 숨기 좋아하는 곳을 먼저 확인하기. 예를 들어, 구석진 공간, 책상 밑과 같은 곳들이 있다.
- 명확한 호출 : 아동의 이름을 크고 분명하게 부르면서 찾는다. 아동이 익숙한 목소리를 들으면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
- 조용한 환경 만들기: 주변이 조용해야 아동의 작은 소리나 움직임을 듣고 찾을 수 있다.
- 시각적 신호 활용 : 손전등이나 핸드폰 후레쉬를 켜고 아동이 어두운 곳이나 숨을 수 있는 곳을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빛을 따라 나오도록 한다.
- 비상 대피 계획 숙지 : 아동이 비상 대피 계획을 숙지하고 있었다면, 그 계획에 따라 대피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장소를 우선적으로 확인해 본다.
- 소방관과 협력 :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에게 아동의 가능한 위치, 특징 및 사진을 제공하여 빠른 대응을 도울 수 있다.

6. 피난안내도 작성법

○ 재난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의 위치를 표시한다.

○ 각 실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을 화살표로 표시한다.

○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까지의 거리를 화살표로 숫자로 표시한다.

각 층의 시설 평면도를 중심으로 범례를 이용하여 소방시설, 비상구 위치, 피난 기구 등의 위치를 표시한다.

○ 피난 안내도는 각 층 또는 동별로 제작하여 배치한다.

○ 그림이나 문자로 구성한 구체화된 안내표식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 사물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표식을 활용한다.

○ 피난 안내도는 쉽게 볼 수 있는 벽면에 부착한다.

(예시)

7. 피난기구의 종류와 특징

-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이 정하는 피난기구 중 사회복지시설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피난기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구분	특징
구조대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오는 기구이다. · 구조대는 수직구조대와 경사구조대가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경사구조대가 사용되고 있다. · 구조대의 특징으로는 - 완강기보다 안전성이 높고, 사용자에게는 공포감이 적다. - 사용자 몸무게로 하강속도를 조절한다. - 혼자서는 설치할 수 없고, 좁은 공간에는 설치가 곤란하다. - 피난 시 조력자가 필요하며,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 - 협착형은 볼록형 밴드 부착으로 서서히 내려가도록 제작되었다.
경사로	· 휠체어 사용자도 스스로 내려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건축 설계 시 부터 고려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 빠른 속도로 내려 올 경우 속도 가속을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미끄럼대	· 미끄럼대는 입구부, 미끄럼부, 출구부, 미끄럼면, 측면판, 난간 및 지지장치로 구성된다. · 미끄럼면의 유효 폭은 40㎝ 이상이고, 경사각도는 수평면 기준 평균 40도 이하, 입구부 크기는 가로 0.5m×세로 0.8m 이상이다. · 어린이집과 같은 유아교육시설에 주로 설치한다. · 혼자서도 내려올 수 있는 특성을 갖는 피난자나 조력자가 동행하지 않고 내려 보내는 경우에 주로 이용한다. · 적응성 : 아동시설이나 노인시설의 이용자 특성에 따라 사용가능하다. - 3층 이하 저층 부분에 사용한다. - 팔꿈치나 무릎부위로 속도를 조절하므로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다. - 설치 공간이 필요하여 도심지역 사용은 제한적이다.
승강식피난기	· 고정설치 방식으로 1명 탑승하여 1층 하강시간 5초 정도 소요된다. · 전기가 끊어져도 탑승자 몸무게로 하강하는 승강기로 정전과 상관없이 사용한다. · 사용자가 발판에 올라서 버튼을 누르면 하강하는 단순한 구조로 사용이 간편하다. ·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등 모든 시설에 사용이 가능하다. · 적응성 : 어떤 종류의 사회복지시설 유형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피난기구			
하강식 구조대	경사로	미끄럼대	승강식 피난기

완강기 사용법	

8. 피난시 고려해야 할 이용자의 행동특성

1) 피난시간을 결정하는 요소

- 시설에서 재난 발생 시 피난행동은 보행자의 환경적인 요건(보행 인원수, 보행자 연령, 이동속도, 보폭, 피난통로)에 따라 달라진다.
- 이동속도는 복도의 폭이나 직선화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설계시 고려해야 한다.
- 화재시에는 연기의 농도, 연기 확산속도, 복도의 밝기, 장애물 등에 따라 피난시간이 달라지므로 이런 요소들이 피난 대응방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피난시 이용자들의 행동특성

- 일상생활 항상 사용하던 익숙한 출입구쪽으로 우선 피한다.
- 지광본능으로 인해 빛이 보이는 쪽으로 향하는 습관이 있다.
- 긴박한 상황이거나 위험이 촉박해지면 막다른 곳으로 피난하게 되는 습성이 있다.
- 화재현장의 피난 양상은 피난자가 처한 환경, 개인, 화재 조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9. 피난 절차

「화재예방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구 분	피난절차 및 방법	
화재경보	☑ 경종(☑전층 □부분층) □ 비상방송설비 ☑ 기타 (옥상)	
피난경로	☑ 제1피난로	0층에서 0층으로 향하는 계단
	☑ 제2피난로	0층 사무실 완강기
	☑ 제3피난로	000000
	☑ 옥상피난	□ 옥상출입 □상시개방 □ 상시폐쇄(잠금장치)] ☑ 자동개폐장치(☑유□무) ☑옥상광장(☑유□무)
집결지	00000 앞	

1) 화재 발생 시 피난행동 절차

순서	업무분장	조치내용
1	최초 발견자	"불이야!" 큰 소리로 외치기
2	신고	사이렌 경종 울리기 및 119 신고
	차단	실내 전기 차단, 가스 차단
	진압	투척소화기 및 분말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진압 실시
	대피	아동 및 직원을 대피장소로 이동 실시 – 계단으로 이동
	구급	구급상자를 챙기고, 아동 대피 실시
	확인	잔존 인원 확인 후 대피
3	집결	반별 대피 인원 파악 및 보고
	구급	부상자 확인 및 응급조치 실시

2) 지진이나 재난 발생 시 피난행동 절차

순서	업무분장	조치내용
1	최초 발견자	"지진이야!" 큰 소리로 외치기
2	신고	사이렌 경종 울리기 및 119 신고
	1차 대피	책상아래에 머리를 감싸고 대피함
	대피	상황이 1차 진정되면 구급상자를 챙기고, 아동 및 직원을 대피장소로 이동 실시
	확인	잔존 인원 확인 후 대피
3	집결	반별 대피 인원 파악 및 보고
	구급	부상자 확인 및 응급조치 실시

10. 피난 대피 유도자와 역할

1) 구성원과 역할

1 피난 대피 유도 조직 개요		
운영시간		☑ 주간편성(09~18시) ☐ 야간편성(18시~06시) ☑ 휴일(토,일,공휴일)
편성	주간	☐ 편성인원 : 대장 1명, 부대장 0명, 대원 0명 ☐ 조직구성 ☑ 지휘반(0명) ☑ 진압반(0명) ☑ 구조구급반(0명) ☑ 대피유도반(0명)
	야간	☐ A조(명) ☐ B조(명) ☐ C조(명)

2 피난 유도 조직 구성 및 임무현황

구 분	성 명	개별임무	비상연락체계	
			사무실	개인
대 장	000	총괄지휘		
부대장	000	현장지휘		
지휘반	000	지휘활동		
	000	유관기관연락		
대피유도반	000	2층 이용고객의 대피유도		
	000	3층 이용고객의 대피유도		
구조구급반	000	업무총괄		
	000	후송 및 구호활동		

휴일/야간	구 분	A조(야간)	B조(야간)	C조(휴일)	D(휴일)
		(18 ~ 19시)	(___ ~ ___시)	(09 ~ 18시)	(___ ~ ___시)
	운영책임자	000/근무자		000	
	대 원	000 근무자		000근무자	

응급 대처 매뉴얼

1. 정의 및 적용범위

- 응급처치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신속하게 시행하는 초기 치료를 의미한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정의한 응급처치의 의미와 필요성은 “다친 사람이나 급성 질환자에게 사고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 사회적 재난, 자연재난 등에 의해 아동, 종사자, 시설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생길 시 관계자들의 대비・대응・복구 활동 등이 필요해지는 응급상황에 적용한다.

2. 응급상황시 행동원칙

1) 현장 상황 및 주변 환경이 안전한지 파악한다.
2) 환자 상태를 확인한다.
3) 응급한 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4) 위험요소가 있는지 확인한다.
5) 화재 현장 같은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환자를 옮기지 않는다.

3. 응급 구조 순서

1) 응급상황 여부를 판단한다.
2) 응급상황 판단이 어려운 경우 119나 1339로 전화하여 응급의료 전문가와 상담한다.
3) 안전한 곳에 옮겨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4) 환자의 상태가 위급한 경우 119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요청한다.
5) 보호자와 연락한다.
6) 각 사안별 계획된 대응방법대로 실시한다(분야별 응급대처 대응방법 참조)

4. 응급처치 방법

1) 일반인이 취해야 할 응급처치
- 기도가 막혔을 때 : 하임리히법
- 의식을 잃고 갑자기 쓰러졌을 때 : 심폐소생술
- 기도유지 : 호흡이 없거나 불규칙한 경우에만 시행
- 인공호흡 : 호흡이 없는 경우에만 시행
- 지혈 : 외부출혈이 심한 경우에만 압박지혈법 이용
- 화상 : 가벼운 상처일 경우 냉찜질이나 흐르는 수돗물, 얼음물로 상처부위를 충

분히 식힌다. 심한 상처일 경우는 차가운 물에 담가 화기를 빼준 다음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옮겨야 함. 응급처치는 일단 데인 부분을 찬물에 20분 정도 식혀야 화기가 빠짐. 된장바르기 등 민간요법은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지양함.

- 기타 : 응급의료체계(1339) 상담원이 제시하는 처치법

2) 구급차가 오기 전 환자를 옮겨야 하는 경우

- 주위가 위험한 현장 : 화재, 붕괴, 침수 등
- 주위에 위험물질이 있는 경우 : 발화성 물질, 유독물질 등

5. 응급구조 요청

○ 119 구조대나 1339에 구조 요청한다.

- 환자의 상태와 위치(주소), 전화번호 말한다. : 여기는 00시 000로, 000입니다.
- 환자의 상태와 응급상황 발생 경위를 설명한다. : 0세의 아동이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머리에 피가 나고 일어나지 못해요.

-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전화를 끊지 말고, 부상자에 대한 도움을 받도록 한다.

6. 응급구조 대응 방법 역할

응급구조 대응 방법과 역할			
구 분	성 명	개별임무	비상연락체계
대 장	000	총괄지휘	
부대장	000	지휘지원, 정보취합	
소방팀	000	신고, 진압	
피난팀	000	대피	
회원관리	000	아동담당	
응급처치팀	000	응급처치	
	000	물품 및 후송관리	
물품관리팀	000	비상재해 물품 관리	
연락팀	000	언론 및 연계기관 연락	

7. 응급구조 방법

1) 심폐소생술

-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경우 가볍게 아동을 흔들면서 의식을 확인한다 : 00아 눈 좀 떠봐 00야 괜찮니?
-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119에 전화해 달라고 부탁한다. 주변에 사람이 없을 시 직접 전화한다.
- 인공호흡이나 흉부압박을 하기 위해 아동을 바로 눕힌다.
- 기도 열기 : 두부후굴 하악거상법 :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린다. 아동의 입이 닫히지 않도록 한다.
- 손가락이나 손등, 귀로 호흡을 확인한다.
-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 아동의 코를 엄지와 검지로 막고 구조자의 입을 아동의 입에 밀착시킨 후 1초간 공기를 부드럽게 불어 넣는다. 코를 잡았던 손을 놓아 아동의 숨이 나오게 한다.
- 흉부압박 : 양쪽 유두를 이은 가상선 흉골의 중심부를 압박한다.
- 오른손을 왼손등 위로 깍지를 끼고 흉부 정중앙이 5~6㎝ 깊이로 내려가도록 누른다. 압박과 이완 시 힘의 비율은 50:50으로 한다. 압박속도는 분당 100회, 30회 압박한다.
- 10초이상 흉부압박이 중단되지 않아야 하며 환자가 회복되거나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계속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 기도확보 후 인공호흡을 2회 실시한다.
- 환자의 상태가 나아질 때까지 심장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를 반복한다.

※ 단, 심폐소생술은 주위에 응급구조사 등의 자격을 갖춘 자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한다.

2) 인공호흡

- 기도를 확보한다 : 한 손을 이마에 얹고 다른 손을 목밑에 넣어서 턱을 치켜올리듯이 하면서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한다. 필요하면 손가락이나 손수건으로 입안의 피, 침이나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 코를 잡고 숨을 불어 넣는다 : 이마에 얹고 있던 손을 일부 떼 손가락으로 환자의 코를 잡는다. 구조자는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입을 크게 연다.
- 입과 입을 맞대고 숨을 불어 넣는다 : 구조자의 입으로 환자의 입주위를 덮어씌우듯 밀착시켜 환자의 가슴이 가볍게 부풀어 오를 때까지 숨을 불어넣는다(입을 맞대는 것이 내키지 않을 때에는 손수건을 얹고 해도 된다.)
- 입을 떼 효과를 확인한다 : 코를 잡았던 손을 놓아 아동의 숨이 나오게 한다.

- 입을 떼 눈으로 가슴이 내려가는 것을 보고 환자가 내쉬는 숨을 뺨으로 확인한다.
- 처음 몇번은 약간 빠르게 연속하여 실시한다. 이후 어른에서는 5초에 1번씩 환자의 호흡이 되돌아올 때까지 반복한다. 호흡이 되돌아올 때까지 반복한다.

3) **하임리히법**

- 아동이 음식물을 먹다가 숨이 막혀하거나 기도가 막힌 것으로 보이면 하임리히법을 사용한다.
- 아동이 의식이 있을 경우 : 아동 등 뒤에 위치한 상태에서 구조자의 한쪽 주먹을 쥔 손을 아동의 명치와 배꼽 끝에 대고 다른 쪽 손으로 주먹을 쥔 손을 감싸안은 다음 양쪽 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후 상방으로 강하게 압박하며 끌어올린다.
- 의식이 없는 경우 : 아동을 눕힌 상태에서 머리를 낮게 위치한 후 명치와 배꼽 사이에 곤꿈치를 대로 그 위에 다른 손을 겹쳐서 상방으로 강하게 4~5회 연속적으로 반복한다.
- 걸렸던 음식이 나올때까지 실시한다.
- 음식이 입안에서 나와야 상황종료라고 봐야하고 음식물이 삼켜졌을 경우 아동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한다.
- 목이 아프거나 속이 답답하다고 할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한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하임리히법**

비상 대응훈련 계획서

1. 목적

본 비상훈련은 실제 화재, 지진 등의 발생 상황을 연출하여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신속한 인원, 장비의 동원상태 및 각자의 임무를 숙지함으로써 화재진압에 적절히 대응하고,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굳건히 함으로써 신속한 재난복구 활동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업무분장

화재, 재난 및 안전사고, 폭설 등에 대비하기 위한 종사자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각 훈련에 적용하여 시나리오 작성, 실행해야 한다.

3. 훈련개요

1) 훈련일시 : 매년 0월 0주 0요일 00시
매년 0월 0주 0요일 00시
2) 훈련장소 : 시설내, 비상대피 후 재집결 장소
3) 대상인원 : 종사자, 이용아동, 자원봉사자, 방문객 명
4) 훈련구분 : 화재사고 /지진/ 대설 등
5) 훈련방법 : 강의 후 실습
6) 종사자별 역할 명시

4. 훈련내용(예시)

1) 화재 발생 가상 시나리오

- 요리시간에 주방에서 화재발생
- 지휘팀, 소화・진화팀, 대피・유도팀, 구조・구급팀의 신속한 임무수행.
-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화재 확대 최소화, 현장 적응훈련 실시

2) 지진 발생시 가상 시나리오

- 강도 3.5 지진 발생
- 대피 훈련

3) 폭설

- 태풍, 호우 안내 과정
- 2차 사고 대비 행동요령

화재(재해) 발생	행동 내용
응급조치 활동	· 화재 발생시 작업중지후 각실에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진압 · 초기진압 실패시 즉시 배전반 전원을 차단 · 최초 발견자 119신고, 1층 도시가스 차단 · 재해를 당한 인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종사자 및 관계자는 즉시 응급조치 실시 후 병원 후송 · 안전관리실내에 재해발생시 필요한 응급 용구와 취급요령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 지진 재해 발생시 즉시 모든 일정을 중지시키고 아동 및 시설 내에 있는 모든 인원을 대피시킨다.
상황의 전파	· 비상 경보체계를 이용한 주위 근로자 및 담당자에게 연락 · 비상 연락망을 이용하여 관련 기관에 재해 상황 보고
복구작업	· 비상 동원 조직의 운영을 통한 신속한 복구작업 실시 · 재해지역 확대방지 및 안전대책 시행 · 재해현장 주변정리
지원 요청	· 재난 규모에 따라 관련기관에 지원 요청
복귀유도	· 대피한 이용아동 및 종사자의 질서있는 복귀 유도
피해결과의 파악 및 보고	· 사고원인 분석 · 사고요인 제거 및 개선 · 피해 결과의 파악 및 보고서 작성 · 재해분석 및 통계, 대책 수립 · 동일, 유사재해의 방지 · 전 직원 및 아동에 대한 안전교육실시

5. 시나리오 계획서 작성 및 실행

훈련명 ⇒ 참가자 ⇒ 훈련 종류 ⇒ 목적 ⇒ 재난상황에 따른 시나리오 ⇒ 훈련 내용 ⇒ 평가

재난 발생 시 업무분장표

담당자	평상 시 업무	화재 및 재난발생 시	안전사고 발생 시	폭설 및 결빙 시
시설장 000	- 지휘명령총괄 (안전관리책임관)	- 지휘명령총괄 - 응급기관 연락 - 화재 및 재난장소 확인 - 지자체 보고 및 보고서 작성	- 지휘명령총괄 - 지자체 보고 및 사고 보고서 작성	- 지휘명령총괄 - 지자체 보고
시설 종사자	- 소방시설유지 - 비상시 통합 연락망 관리	- 관계기관 통보 - 부모와 관계기관 통보 - 대피유도 - 주요 서류와 물건반 출	- 관계기관 통보 - 사고 문서작성, 관리 - 안전사고 장소 확 인 및 현장보존	- 기상상황 수시파악 - 아동 보호 총 괄
	- 시설 및 설비 최종점검 - 긴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매뉴얼 관리	- 대피유도 및 최종점 검 - 구급약품관리	- 안전사고 장소확 인 및 아동보호 - 구급약품관리	- 난방(보일러) 시설확인
시설 종사자 000	- 문서관리 (연간소방교육 계획, 자체소방시설을 활용한 소화활동 등)	- 비상사태 시 비상벨 및 시설내 전달 - 응급처치 및 지정병 원으로 긴급후송	- 응급처치 및 지정병원으로 긴급후송	- 제설작업 - 미끄럼주의 표지판 설치
시설 종사자 000	- 현관, 화장실 등 관리 - 가스, 보일러, 전기관리	- 현관(비상)문 개방 - 대피유도 및 아동 보 호	- 안전사고 장소확 인 및 아동보호	- 제설작업 - 미끄럼주의 표지판 설치
시설 종사자 000	- 조리실 점검 - 가스, 보일러, 전기점검	- 대피유도 및 아동보 호 - 가스 차단 - 전기 차단	- 아동보호 업무 보조	- 비상식량확인 - 난방(보일러) 시설확인

※ 재난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종사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아동시설에서 발생가능한 재난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여 실제 또는 도상훈련을 실시함

※ 재난상황 업무분담 계획 수립 후에는 모든 종사자가 함께 공유하고 본인의 업무를 정확히 인지하도록 함

연간 대피훈련 운영계획

월	재난 종류	발생 장소	발생 시각	대피훈련 시나리오 내용	비고
3	화재	사무실	10:00	사무실에서 교사 컴퓨터 과부하로 인한 화재발생으로 대피	
4	화재	거실	11:00	공기청정기 콘센트에서 스파크 발생으로 대피	
5	화재	화장실	10:30	화장실 비데에서 누전으로 화재발생으로 대피	
6	지진	전체	10:00	거실에서 흔들림 감지하여 전체에게 알리고 대피	
7	화재 폭발	보일러실	불시	보일러실 가스 누출 후 폭발위험으로 대피	
8	화재	주방	11:30	주방에서 타는 냄새가 지속되어 대피	
9	지진	전체	12:00	건물이 흔들리고 전기 합선 위험으로 인한 화재 발생으로 대피	
10	화재	조리실	10:30	전기밥솥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으로 대피	
11	지진	전체	15:00	시설의 창문의 흔들림을 감지하여 대피	
12	화재	전체	불시	거실에서 생일잔치 중 촛불로 인한 화재 발생으로 대피	
12	대설	현관	11:00	등원 후 눈이 내려 5㎝ 두께의 눈이 쌓이고 눈이 오는 상황 (대설 주의보)	
	결빙, 한파	전체	16:00	한파가 2일 동안 계속되고 밤사이 눈이 내려 시설 앞이 얼어붙은 상황	
1	화재	화장실	10:30	세탁기 누전 화재 발생으로 대피	
2	지진	전체	11:00	교실의 놀잇감이 심하게 흔들림을 감지 하여 대피	

소방훈련 및 피난 계획 및 시나리오

훈 련 명	화재 대피 훈련	훈 련 일	월 일
참 가 자	종사자 ( ) 명 /아동 ( ) 명	시 간	시 분
훈련 종류	화재대피 실제훈련		
훈련 목적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 방법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고, 화재 대피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올바르고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		
재난상황 시나리오	요리 프로그램 도중 화재 발생으로 대피		
훈련 전 점검	훈련계획의 내용 숙지, 재난 시 업무분담 숙지, 대피로 동선 파악, 소화기 위치 파악, 표지판 부착 (비상대피훈련 중 – 집결지 안내)		
훈련 내용	1.화재경보사이렌 → 2.대피경로로 대피, 대피장소 집결(아동 인원체크) → 3.부상자, 사상자 확인 및 응급처치→ 4.부모에게 연락→ 5.훈련 종료		

	훈 련	평가중점내용
시나리오 세부내용	**1. 조리실에서 화재발생 – 화재 경보기 울림** ① 가스렌지에서 화재 시작 - 화재 첫 발견자는 불이 났다는 것을 주변에 신속하게 알림 예) 큰 소리로 "불이야! 불이야!" 외침 - 소화기를 사용한 조기 진화 시도 ※ 초기진화에 실패했다는 가정 하에 대피훈련 계속 진행 - 가스 및 전기 차단 - 조리실 문 닫고 000 으로 이동 ② 시설장 – 지휘명령총괄 화재장소 파악 후 응급기관(119) 연락 119 전화요령- 정확하고 침착하게 예) " 여기는 00시 00로 , 빌딩 0층입니다. 프로그램 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정확한 주소와 알기쉬운 큰 건물 등을 알려줌 신고자의 전화 번호를 알려줌 가능하면 무엇이 타고 있는 지와 사람이 거주하는 지를 알려줌	육성 및 경보기 소리 전달 여부 소화기 사용 위치, 상황설명
	2.. 아동 대피시작 - 화재경보음 울림과 동시에 대피시작 - 대피시 양 끝 벽쪽으로 이동하여 통로 출입로를 확보 ① 대피 시작 - A조는 현관문으로 B조는 비상문으로 대피 - 취사원 /공익복무요원 제일 뒤에서 대피유도 - 보행이 어려운 아동은 교사가 부축해서 대피	질서유지하며 대피 대피시간

	대응활동	평가중점 내용
시나리오 세부내용	- *** – 현관에 있는 구급약품 가지고 대피 - *** – 비상연락망 (긴급연락표) 가지고 대피 ② *** – 현관문, 비상문 개방 ※ 현관문(비상문)에 먼저 도착한 종사자가 현관문, 비상문 개방 ③ *** – 대피유도하며 교실 문 닫고 대피 ④ *** - 최종으로 각 반 교실 확인 후 대피 ⑤ *** -정해진 장소에 집결 인원 체크 지휘명령총괄(시설장)에게 보고	대피한 인원파악 (명수)
	3. 부상자, 사상자 확인 및 응급처치 ① *** – 부상자 확인 후 응급처치 실시, 구급차 후송 ② *** – 관련기관 (인근 병원 등) 연락, 사상자 확인 ③ 사회복무요원, 취사원 - 안전한 곳에서 대피 지속	부상자 응급처치/ 후송
	4. 부모에게 연락 - 아동이 직접 연락하거나 비상연락망을 이용하여 부모에게 연락	연락시간/ 응대 태도
	5. 비상 대피 훈련 종료 ※ 부상자,사상자 없을 시 1-2-5진행/ 부상자,사상자 있을 시 1-2-3-4-5 진행 **제 2 집결지 선정** 화재 시 폭발위험과 불길이 커지는 것을 대비하여 제2 집결지(대피소)를 정하고 학부모에게도 알려 영유아를 안전하게 인계 하도록 함(전화불통대비)	대피시간

피난 훈련계획 및 시나리오(지진 등 자연재해)

훈 련 명	재난 대피 훈련	훈 련 일	월 일
참 가 자	종사자 ( ) 명 /아동 ( ) 명	시 간	시 00 분
훈련 종류	지진대피 실제훈련		
훈련 목적	지진 발생 시 대처행동요령을 익히고 안전한 대피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다.		
재난상황 시나리오	프로그램실에서 흔들림을 감지하여 전체에게 알리고 대피(강도 3.5)		
훈련 전 점검	훈련계획의 내용 숙지, 재난 시 업무분담 숙지, 대피로 동선 파악, 소화기 위치 파악, 표지판 부착 (비상대피훈련 중 – 집결지 안내)		
훈련 내용	1. 재난위험경보 사이렌 → 2. 지진 행동요령 진행→ 3. 대피경로로 대피, 대피장소 집결(인원체크) → 4. 부상자, 사상자확인 및 응급처치→ 5. 부모에게 연락→ 6. 훈련 종료		

	훈 련	평가중점 내용
시나리오 세부내용	**1. 지진 발생 감지 및 알림** ① *** 지진 감지 지진 첫 감지자는 지진이 났다는 것을 주변 및 지휘총괄(시설장)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지진 시 행동요령을 진행 함 예) 큰 소리로 "지진이다!" 외침. 시설장에게 알림 등 ② 시설장 – 지휘명령총괄 시설 전체에 지진 비상상황 알림 (재난위험경보 사이렌 울림) ③ 취사원 – 가스 및 전기 차단 - 조리실 문 개방 **2. 지진 시 행동요령 진행** ① 각 교실 교사 – 각 반 문 개방 - ***는 비상문 개방 - **는 현관문 개방 ※ 진동이 심할 경우는 자세를 낮추고 머리를 보호 하는 것이 우선 ② 전체 아동은 자세를 낮추고 머리를 보호 함 - 책상 밑으로 대피, 방석이나 가방을 쓰고 대피 ※ 주변에 방석이나 가방 등 쿠션감이 있는 것으로 머리를 보호 ③ 흔들림이 멈출때까지 대기 (2분정도) - 지휘명령총괄 (시설장) - 흔들림의 정도를 살핀 후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대피 경보기 울림	지진상황 전달여부 시설 전체 지진 상황 알림 지진 시 행동 요령 숙지 체크리스트

	대응활동	평가중점 내용
시나리오 세부내용	**3. 각 반 아동 대피시작 – (화재)대피 경보기 울림** - 흔들림 멈춘 후 화재경보음 울림과 동시에 대피시작 ① A반 대피 시작 - A반은 현관문으로 B반은 비상문으로 대피 - 시설종사자와 아동이 선두에서 대피유도 - 취사원 /공익복무요원 제일 뒤에서 대피유도 - 보행이 어려운 아동은 시설종사자가 부축해서 대피 - *** – 현관에 있는 구급약품 가지고 대피 - *** - 비상연락망(긴급연락표) 가지고 대피	질서 유지하며 대피 대피시간
	※ 2-① 에서 현관문 및 비상문 개방에 실패했을 시 . *** 교사 – 현관문, 비상문 개방 (현관문, 비상문에 먼저 도착한 시설종사자가 현관문, 비상문 개방) 현관문, 비상문 중 한 곳이 문 뒤틀림으로 개방되지 않을 시 대피유도자는 동선을 바꾸어 대비 (동선파악 및 상황에 맞게 대피훈련 실시)	
	② ** - 최종으로 각 반 교실 확인 후 대피 ③ 아동 및 종사자 정해진 장소에 집결 - 각 반 인원 체크 지휘명령총괄 (시설장)에게 보고	대피한 아동수확인
	4. 부상자, 사상자 확인 및 응급처 – 부상자 확인 후 응급처치 실시, 구급차 후송 – 관련기관(인근 병원 등) 연락, 사상자 확인, 아동과 안전한 곳에서 대피 지속	부상자 응급처치/ 구급차 후송
	5. 각 반 아동 부모에게 연락 - 시설종사자가 비상연락망을 이용하여 부모에게 연락	연락시간/ 응대 태도
	6. 비상 대피 훈련 종료 ※ 부상자, 사상자 없을 시 1-2-3-6진행 부상자, 사상자 있을 시 1-2-3-4-5-6 진행 지진으로 대피 시 주의사항 · 문이 비뚤어져 갇힐 수 있으므로 문을 열어서 출구 확보 · 엘리베이터 탑승 금지 · 건물 안에 있지 않고 외부로 대피 · 최종 집결 장소는 주변에 기둥이나 건물 등이 없는 넓은 공간이나 공터, 공원으로 집결 ※ 실제 지진상황에서는 경미하더라도 119 혹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자체 등에 상황을 알림	대피시간

비상훈련계획 및 시나리오(폭설, 결빙)

훈 련 명	비상 대응 훈련	훈 련 일	월 일
참 가 자	종사자 ( ) 명 /아동 ( ) 명	시 간	시 00 분
훈련 종류	대설대응 실제훈련		
훈련 목적	대설 상황 시 필요 물품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다.		
재난상황 시나리오	등원 후 눈이 내려 5㎝ 두께의 눈이 쌓이고 (대설 주의보) 눈이 오는 상황 (대설 주의보 - 24시간 신적설양이 5㎝이상 예상될 때 대설 경보 - 24시간 신적설양이 20㎝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30㎝이상 예상될 때)		
훈련 전 점검	제설 작업 도구 점검 (빗자루, 염화칼슘 혹은 모래, 미끄럼주의 표지판)		
훈련 내용	1. 대설 상황 알림 → 2. 대설 시 매뉴얼 진행 → 3. 기상정보 듣기 → 4.부모에게 연락 → 5. 각 반 상황파악 → 6. 제설작업 → 7. 종료		

	훈 련	평가중점내용
시나리오 세부내용	**1. 대설 상황 인지 및 알림** ① 시설장 – 지휘명령총괄 - 기상청 홈페이지 및 기상청 방송 청취하며 상황 예측 - 센터 전체에 대설 상황 알림 **2. 대설 시 메뉴얼 진행** ① *** – 기상정보 들으며 기상상황 수시 파악, 현관에 미끄럼방지 카펫 깔기 ② *** 상급기관에 전화 연락 - 아동 이동 금지, 비상식량 및 물 확인, 보일러 상태 확인 ※ 공급처가 동결 수 있는 것을 대비하여 물 비치해 둠 ③ *** - 정보 취합하여 지휘명령총괄, 시설장에게 보고, 아동 보호 및 비상식량 등 정리하여 보고 ④ 눈이 그치면 제설 작업 진행 (빙판길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뿌리고 미끄럼주의 표지판을 설치) **3. 대설 상황 훈련 종료** -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아동들의 체온유지가 중요함으로 난방 (보일러) 시설의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함 - 식수를 충분히 준비해 둠 - 기상청, 방송사 일기예보 정보를 일간, 주간별로 수집분석 하여 종사자가 학부모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여 비상상황을 대비함	시설 전체 대설 상황알림 연락시간/ 응대 태도 비상식량 및 물 확보 보일러 상태점검 제설작업 숙지

전기 안전관리 계획서

1. 목적

전기 안전 계획서는 전기사고나 화재로부터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2. 적용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적용된다.

3. 적용범위

○ 이 계획은 시설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과 이용자에 대해 적용한다.

○ 이 계획은 전기사고로 인한 감전, 누전, 화재 대응차원에 대해 적용한다.

4. 주요내용

1) 전기설비 안전관리 점검

-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차단기의 과열이 없는지 상태 점검
- 옥내・외배선의 전선용량, 공사방법 적정 여부 및 열화・손상은 없는지 점검
- 물이 젖거나 습기에 노출된 전기기기 사용 금지

2) 난방기구(전기난로) 안전관리 예방 활동 점검

- 문어발식 콘센트에 난방기구 코드가 꽂혀 있지 않은지 점검
- 난방기구의 배선이 노후화되거나 단선 상태가 없는지 점검

3) 가전용품 안전관리 예방 활동 점검

- 시설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전용품 점검 : 냉장고, 에어컨, 공기청정기, 가습기, 난방기구, 주방용품, 사무용품
-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 만지지 않기
- 불량제품이나 고장제품 사용하지 말기

4) 배전관・전선 안전관리 예방 활동 점검

- 규격에 맞는 전선을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

- 플러그 안전장치 처리용품 사용하기
- 전연되거나 단선 상태의 전선이 없는지 점검
- 전기 분·배전반에 분진, 부식, 누수가 없는지, 설치위치가 적정한지 점검
- 문어발식으로 콘텐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
-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플러그 뽑기 생활화
- 전기가 흐르는 두 배선 쇼트(단락)가 닿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발생 점검
- 오래된 콘센트에 먼지까 쌓여 화재가 생각지 않게 트래킹 예방 점검
- 전기선이 까지거나 벗겨져 전기가 흐르지 않는지 절연 노화 예방 점검
- 전기줄이 끊기거나 망가져서 단선 상태(반부분 단선)에 발열이 생기지 않는지 점검

5) 아동교육
- 아동들이 콘센트에 장난치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하기
- 프로그램 시간에 전기용품(코팅기, 글루건, 인덕션 등)을 사용하게 될 시 어른들이 직접 플러그를 사용하고 만지지 않도록 교육하기
- 전기 안전의 중요성과 재난 시 대처요령을 교육하기

5. 일상적 전기 안전관리계획

구 분	관 리 항 목	관 리 주 기				관리계획
		일	주	월	분기	
안 전 점 검	전기, 전열, 냉난방, 가전, 안전장치 등					담당자 정 :000 부: 000 정기정검 및 보완 내용 :

- 누전차단기나 분전기 수시로 확인
- 재난 발생시나 화재 발생시 전원차단 여부 결정
- 정전이나 각종 전기 문제 발생 후에는 전문가의 점검 받기

가스 안전관리 계획서

1. 목적

가스 안전 계획서는 가스 누출사고로 인한 중독, 화재로부터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2. 적용범위

○ 이 계획은 시설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과 이용자에 대해 적용한다.
○ 이 계획은 가스 사고로 인한 중독이나 화재 대응차원에 대해 적용한다.

4. 주요내용

1) 가스 설비 및 기기 안전관리 점검
- 가스 연소기의 상태와 안전장치 상태 점검
- 가스 누출 경보, 차단장치 설치 필수
- 정기적으로 검지기나 발포성 용액으로 가스 누출 여부 점검
- 보일러 온수기나 배기통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 점검
- 연소기는 검사품이나 KS인증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점검

2) 가스 사용 안전관리 예방 활동 점검
- 가스 사용시 자리를 뜨지 않도록 점검
- 사용 후에 가스 코크나 중간밸브가 잠금처리 되어 있는지 점검

3) 화재 안전관리 예방 활동 점검
- 가연성 물질을 가스 근처에 두지 않도록 점검
- 가스 사용시에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창문의 개방 및 연소기 작동시 환기팬이 작동되는지 확인 점검

4) 대응 및 안전관리 예방 활동 점검
- 가스 냄새로 가스가 새는 것이 감지되면 연소기의 점화콕과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닫아 가스 공급을 차단하고 창문과 출입문을 열어 누출된 가스를 밖으로 배출하고 환기
- 가스 냄새가 감지될 경우 절대로 불 사용하지 않도록 점검
- 가스의 경우 바닥을 쓸어 공기 환기

- 가수 누출이 의심될 경우라도 스위치 조작으로 인한 스파크에 의해 폭발가능성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풍기나 선풍기 등으로 환기하지 말 것.
- 장마철에 가스시설이 물에 잠기거나 젖었을 경우 전문가의 점검 필수
- 가스 보일러의 배기통에 물이 찼을 경우 보일러에서 나오는 폐가스가 실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일러 작동이 원활하지 않거나 의심될 경우 반드시 제조사의 A/S 받도록 점검
- 가스 누출 후 유관기관에 연락하여 즉시 조치. 원인파악 후 가스 사용 재개할 것

5) 아동교육
- 아동들이 가스 밸브를 만지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하기
- 실내외 가스 설치 장치 만지지 않도록 교육하기(예-실외 LPG가스통)
- 가스 누출과 안전의 중요성과 재난 시 대처요령을 교육하기
- 가스 냄새를 맡았다고 느낄경우 반드시 종사자에게 알리기 교육하기
- 대피 후 어지럼증이나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응급처치 받도록 교육하기

5. 일상적 전기 안전관리계획

구 분	관 리 항 목	관 리 주 기				관리계획
		일	주	월	분기	
가 스 점 검	가스, 보일러, 연소기, 안전장치 등					담당자 정 :000 부: 000 정기정검 및 보완 내용 :

부록

아동복지시설 안전점검표

시·군·구	시설유형	시설명(운영법인)	시설담당자	연락처
운영주체			시설장	
시설소재지			연락처	
점검유형				

분야별 안전점검				
분야		점검항목	점검결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자 교육 훈련		시설 안전관리계획서를 시설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매년 수정 보완하고 있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안전관리책임관(시설장) 및 정·부 안전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에게 안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생활시설 연2회, 이용시설 연1회 이상)	결과	
			사유	
			조치사항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책임보험 가입 여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였는가?	결과	
			조치사항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의 사망 시 1인당 보장 한도액은 얼마인가?	결과	
			조치사항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의 사고당 보장 한도액은 얼마인가?	결과	
			조치사항	
소방안전관리	소화기	복도나 각 실마다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소화기의 압력계 지침 위치가 녹색이며 내부 분말은 굳어 있지 않은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소화설비	소방 관련법에 따른 자동화재 탐지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강화된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정기 점검을 받고 있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옥내소화전함 내에 호스와 관창의 상태가 양호하며, 개폐 밸브가 잘 열려 물이 방수되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소화전 주변 장애물로 인해 사용상 불편함이 없으며, 설비 표지를 제대로 부착하고 있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스프링클러 헤드가 미설치된 부분이 있거나 살수반경 내에 장애물은 없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는 소방용수는 적정량을 확보하고 있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는 소방용수는 적정량을 확보하고 있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분야별 안전점검				
분야		점검항목	점검결과	
소방안전관리	자동화재탐지기	수신기의 모든 스위치가 정상위치에 있으며, 전원표시등이 항상 켜져 있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되어 소방서로 정상 연결되고 있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피난설비등 적정관리	복도나 실내에 피난계획에 따른 피난지도와 피난방법이 부착되어 있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피난유도등은 항상 켜져 있으며, 식별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은 없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비상조명등이 지정위치에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작동하고 있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시설별 이용자특성에 맞는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설치된 피난기구는 견고하며 설치위치 표시 및 사용방법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피난로가 확보되어 있으며, 비상구 폐쇄 및 장애물 적치 등으로 피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방화문(방화셔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제연설비가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배연설비가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규정에 맞게 갖추고 있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내화	외단열(外斷熱) 공법으로서 건축물의 단열재 및 외벽마감재를 난연재료(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의 재료)로 사용하였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내부마감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였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건축물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출입통제구역관리	기계실 등 접근 제한 장소에 출입통제 조치가 되어 있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분야별 안전점검			
분야	점검항목	점검결과	
전기	배·분전반의 배선용 차단기 및 누전차단기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및 차단기의 과열·손상은 없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옥내·외배선의 전선용량, 공사방법 적정여부 및 열화·손상은 없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가스	가스누출 경보차단장치 및 가스누출 자동차단기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가스배관에는 손상이 없으며, 비눗물 등을 활용하여 가스누출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보일러·배기통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급기구와 환기구는 막힌 곳이 없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LPG 저장설비 주변에 가연물이나 화기가 없으며, 보관상태가 적절한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도시가스. LPG 등 각종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수시 점검을 받고 있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연소기는 검사품 또는 KS인증품을 사용하였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하절기 재난대응 대책	재난발생 시 정보수집과 경보 전파방법을 숙지하고 있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재난대응 협력기관(소방서, 지자체 등)과 비상연락망이 준비되어 있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풍수해에 대비한 수방자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재난으로 고립되었을 때 시설 생활자에 대한 비상식량과 의약품 등을 구비하고 있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태풍・집중호우에 대비한 대응조치가 되어 있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낙뢰에 대비한 피뢰설비 및 접지가 되어 있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혹서기에 대비하여 냉방장치 등을 갖추고 있으며,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분야별 안전점검			
분야	점검항목	점검결과	
동절기 재난대응 대책	건축물, 위험물저장시설, 비닐하우스, 임시건물 등 폭설에 대비한 시설물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폭설 발령 시 긴급 피난할 수 있는 피난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피난 시 피난도우미 등을 활용한 피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폭설로 시설이 고립되었을 때 식량 ·식수· 의약품 등 구호대책이 준비되어 있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제설장비와 제설계획을 갖추고 있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급수 ·난방시설에 대한 동파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겨울철 전열기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가스공급 중단에 대비한 난방연료 확보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재난발생 시 정보수집 및 경보 전파방법을 숙지하고 있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재난대응 협혁기관(소방서, 지자체 등)과 비상연락망이 준비되어 있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시설물 안전 관리	건축물 지반침하, 구조체(벽, 지붕, 옥상 등)에 변형 및 누수의 흔적이 있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철근의 노출·부식, 콘크리트의 벗겨짐 또는 떨어짐, 창호 개폐 불량 등 건축물에 이상 현상이 발생한 부분은 없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지붕·옥상배수관·홈통 또는 주변의 하수구, 배수구에 막힘 부분은 없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시설 주변의 담장이나 옹벽에 손상된 부분이 있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시설물이 내진 설계 적용이 되었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내진 설계 적용이 안된 경우,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내진보강공사 등 내진성능 확보를 하였는가? ※위 (56) 항목에서 "미흡"일 경우만 작성	결과	
		사유	
		조치사항	

분야별 안전점검			
분야	점검항목	점검결과	
감염병 관리	감염병 유행 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을 마련(현행화) 운영하고 있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감염병 관련 비상연락체계(격리시설-관할보건소-시군구 및 시도)를 구축하여 현행화 되고 있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의심증상 확인, 출입통제 등 시설별 감염관리 책임자(방역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종사자, 이용자, 입소자 등 예방수칙 및 감염 대응지침 등 교육 및 전파를 실시하고 있는가?	결과	
		사유	
		조치사항	
	시설 내 감염병 증상자(의심환자) 발견시 격리(대기)할 수 있는 격리시설(공간)을 확보하고 있는가? * (이용시설) 대기공간 / (생활시설) 격리공간	결과	
		사유	
		조치사항	

입주 건물 전체 층수 파악		종합 의견		기능 보강 및 소요 예산	기능보강		
					소요예산 (백만원)	필요시 예상 되는 소요 예산	
						- 공공	
						- 민간	
					확보시기		

상기와 같이 대상 시설을 조사함 2025. .

조사자 : 소속 직급 성명

재난 발생 보고대상 기관의 지원업무 및 보고내용

보고기관	지원업무 및 보고내용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관련 담당실 (과)	○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복구절차 협의 등을 위한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지역 내 유관기관 공조 및 통합 지휘체계 확립 • 사상자 치료·장례, 이재민 구호, 긴급복구 등 • 구호 물품 지급 및 인명피해 지원 • 이재민 임시 주거 건축, 및 가동 • 사망자 유족 대책 수립·추진 및 부상자 치료 지원 ○ 사고 잔해물 처리 및 인력·장비 동원 명령, 인근 시·군·구 응원 요청 ○ 관련 기관 합동 화재 원인조사 참여 • 피해실태조사, 환경영향 예측 및 복구를 위한 합동조사반 ○ 폐기물 처리 지원 대책 추진 ○ 파손·방치 차량 견인 및 사고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교통 두절 지역 시내버스 정류소 시설물 점검 및 복구 ○ 대형화재에 따른 정확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 건축폐기물 처리 등 장비·예산 활용방안 수립·추진 ○ 사고수습 및 복구 장기화 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 강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련 담당과	○ 시설이용자 관련 행정적인 조치사항 지원 ○ 타 시설로의 이송과 관련된 자료 지원 ○ 기타 시설이용자 관련 자료 지원
소방서 (119)	○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 화재피해조사 및 원인조사 ○ 응급 복구 계획 및 원인조사 ○ 응급 복구 계획 수립·지원 ○ 부상환자 긴급 후송 ○ 복구 지원체계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기타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 엘리베이터, 소방시설 관리업체 등 시설 관련 바우처 업체 등

참고문헌

김병만·임홍남·정진성 공저, **놀이 배움 중심 아동안전관리**, 2025, 양서원.

김창현, **안전교육과 안전관리**, 2022, 양서원.

김혜수·정현주, **아동안전관리(제2판)**, 2023, 공동체.

보건복지부, **아동영유아 복지시설 재난안전관리 매뉴얼,** 2024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2024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2015, 진한엠앤비.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아동복지시설 안전한 환경기준선 연구**, 2024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 2021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중심 자연재난관리 가이드라인**, 202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한 미래를 위한 교육(교사용 지도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재난안전관리**, 2021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국가재난안전포털(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main/main.html)

아동권리보장원(https://www.ncrc.or.kr/ncrc/main.do)